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





국립국어원 2011-01-0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17-01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



---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7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 갑 영



---

## 연구진

---

연구책임	윤소영 책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연구자	조현성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미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교수) 최은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대우부교수)
연구원	신효원 위촉연구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원 보조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이람 보조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b>제1장 서론</b> .....	<b>1</b>
<b>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b> .....	<b>3</b>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5
<b>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b> .....	<b>6</b>
1. 연구 범위 .....	6
2. 연구 방법 .....	6
<b>제2장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b> .....	<b>11</b>
<b>제1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b> .....	<b>13</b>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령 .....	13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시행 .....	17
<b>제2절 자격제도 취득 관련 문제</b> .....	<b>22</b>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	22
2.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	26
3. 비학위과정의 운영 및 관리 .....	28
<b>제3절 국내 유사 자격제도 비교</b> .....	<b>31</b>
1. 교과과정 및 교과목 지정 .....	31
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 .....	34
3. 급수별 학력 요건 .....	37
<b>제3장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실태 조사</b> .....	<b>41</b>
<b>제1절 학위과정 운영실태</b> .....	<b>43</b>
1. 시도별 학위과정 운영실태 .....	43
2. 방문조사 결과 .....	45
<b>제2절 비학위과정 운영실태</b> .....	<b>54</b>
1. 시도별 비학위과정 운영실태 .....	54

2. 방문조사 결과 .....	55
제3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	64
1. 조사 방법 .....	64
2. 조사 결과 .....	65
<b>제4장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b>	<b>75</b>
제1절 학위과정의 교과목 지정 및 자동취득 방안 .....	77
1. 교과목 지정 안 .....	77
2. 교과목 지정에 따른 자동취득제 절차 .....	83
3. 교과목 지정에 따른 정책 과제 .....	84
제2절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방안 .....	86
1. 인증기준 안 .....	86
2. 인증 절차 .....	89
3. 인증제 실시에 따른 정책 과제 .....	90
제3절 전문학사 자격요건 도입방안 .....	92
1. 전문학사 자격요건 안 .....	92
2. 전문학사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정책 과제 .....	93
<b>제5장 법령 개정안 .....</b>	<b>95</b>
제1절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97
1. 주요내용 .....	97
2.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비교 .....	100
제2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110
1. 주요내용 .....	110
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	110
<b>제6장 결론 및 제언 .....</b>	<b>129</b>

<b>부록</b> .....	<b>135</b>
<b>[부록 1] 국내 자격제도 유사사례</b> .....	<b>137</b>
<b>[부록 2]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현황</b> .....	<b>152</b>
<b>[부록 3] 방문조사 질문지</b> .....	<b>159</b>
<b>[부록 4] 설문조사 질문지</b> .....	<b>165</b>

>>> 표 목차

<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 14

<표 2>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심사 일정(2011년도) ..... 17

<표 3>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 등급 유형별 제출서류 ..... 18

<표 4> 한국어교육 분야 기관심사 일정(2010년 이후) ..... 20

<표 5> 한국어교육 분야 기관심사의 대상 및 제출자료 ..... 20

<표 6>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의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 23

<표 7> 한국어교육 분야 비학위과정의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 25

<표 8>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요건 ..... 26

<표 9> 유사자격제도의 지정교과목 실시 여부 ..... 33

<표10> 유사자격제도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운영 여부 ..... 35

<표11> 유사자격제도의 급수별 학력비교 ..... 38

<표12> 전국 시도별 학위과정 개수 ..... 44

<표13> 학위과정 조사 현황 ..... 45

<표14> 학위과정 방문조사 내용 ..... 46

<표15>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1) ..... 48

<표16>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2) ..... 49

<표17>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3) ..... 51

<표18>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4) ..... 53

<표19> 전국 시도별 비학위과정 개수 ..... 55

<표20> 비학위과정 조사 현황 ..... 56

<표21>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내용 ..... 56

<표22>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1) ..... 57

<표23>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2) ..... 58

<표24>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3) ..... 63

<표25> 한국어교원 교육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 64

<표26> 과목 예시의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 67

<표27> 과목 예시에 따른 인정과목 제시의견 ..... 68

<표28>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의 필요성 인식 ..... 71

<표29> 지정과목 제안(1차안) ..... 77

<표30> 인정과목 제안(1차안) ..... 78

<표31> 지정과목과 인정과목 제안(최종안) ..... 80

<표3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개정안 .....	82
<표33>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제안 .....	86
<표34>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 자격요건 제안 .....	92
<표35>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개정안 비교 .....	100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절차 ..... 9

<그림 2> 한국어교육 분야 기관 심사 체계도 ..... 21

<그림 3> 자격증 자동취득을 위한 지정과목 실시에 대한 의견 ..... 65

<그림 4> 지정과목 실시에 대한 의견 ..... 66

<그림 5>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 69

<그림 6>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범위에 대한 의견 ..... 70

<그림 7>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 70

<그림 8>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의견 ..... 72

<그림 9>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방식에 대한 의견 ..... 73

<그림 10> 개정안에 따른 학위과정의 자동취득제 절차 ..... 83

<그림 11> 개정안에 따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절차 ..... 8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한국어교원의 양성 및 자격제도에 대한 근거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둔다.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1,2,3급으로 나누어지며, 1급은 2급 취득 후 경력을 쌓아 승급하는 방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고, 2급과 3급은 자격요건이 충족될 시 무시험검정 또는 시험 검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즉, 최초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전공/복수전공, 부전공)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일정 시간 관련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2011년 현재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64개 기관 86개 과정,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107개 기관 117개 과정이다. 이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심사 신청을 한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심사신청 등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2008년에 수행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의 자격 부여와 관련된 자격 요건을 제언한 바 있다. 이 연구는 1,2,3급 외의 한국어 지도자 급수의 신설 가능성, 승급을 위한 한국어교육 경력 기준 산정 및 교육 기관 범위 조절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연구 결과, 1,2,3급으로 되어 있는 한국어교원의 자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을 이전의 대학과 대학부설 기관에서 초·중·고등학교 및 그 외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어교육경력을 산정하는 데 연수(年數)와 시간 수(時間數)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자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2009)』,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2010)』 등이 있다. 이 자료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한 연구 등을 통해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문제이다.

2005년 법 제정과 함께 최초로 만들어진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나타난 과목 예시는 이후에도 몇 차례 수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목 예시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교과과정 및 교과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자격신청 때 매년 심사를 통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둘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던 초기에 교원의 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이후 많은 수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생겨났으며 이 기관들은 정규 과정에 속하는 대학 등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거나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데 충분한 시설과 강사진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제제가 없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셋째, 설립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관리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환경 및 질적 수준을 위해 2010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단기양성기관을 위한 운영지침<sup>1)</sup>’이 마련되어 각 기관에 배포된 바 있으나, 이 지침이 강제성과 구속성을 띠지 못하여 실제 운영되는 내용과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질 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관리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에 한국어교원의 질 유지를 위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인력활용 문제이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등에서 배출된 자격증 취득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으며, 교원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도 급여 지급 등의 내부 상황으로 채용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력수급의 시급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 중에서 본 연구는 자격취득과 관련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 유지와 관리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다루어 보려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부문의 학력차별완화 정책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 전문학사 요건을 도입하는 문제도 다루게 된다.

1) ‘단기양성기관’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지칭한다. 현재(2011.7)까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구분은 학위과정(대학 및 대학원 등)과 단기양성과정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는 각 과정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의 회의를 통해 ‘학위과정 운영기관’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이는 보고서 내용은 물론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수정하여 제시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 지정 방법,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 방안, 그리고 자격제도 내 전문학사 요건 도입 방안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교과과정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운영되는 심사과정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격증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비학위과정에 대한 인증제 실시방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기관의 교육의 질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학사에 대한 요건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조건에 부가함으로써 학력차별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학력별로 보다 공평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개선방법은 구체적인 법률 개정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즉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을 지정하고, 비학위과정의 인증제를 실시하며, 전문학사 요건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현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등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령 항목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자격제도 개선이 정책적으로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령 개정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실제적인 법령 개정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담당자가 숙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는 그러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취득과 관련해서 심사를 신청한 전국의 171개 기관 203개 과정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운영실태와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유사 자격제도로써 교육분야(유치원 정·준교사, 초·중·등 정·준교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와 문화분야(사서), 그리고 복지분야(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는 한국어교원의 주 역할이 교육이라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이라는 점,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의 교육에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한국어교육 분야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기관 개요, 교과과정 및 교과목, 학생, 강사,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한국어교육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검토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문헌조사, 유사 자격제도 비교조사,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대상의 교과목 기초자료조사와 일부 방문조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한 관련대상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문헌조사는 2008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 2010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등의 보고서와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자료 등을 포함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비교된 국내 유사 자격제도로는 유치원 정·준교사(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정·준교사(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사(교육과학기술부), 보육교사(여성가족

부), 사서(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영양보호사(보건복지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각 제도별로 지정교과목 실시여부, 비학위과정 양성기관 운영여부 및 실태, 급수별 학력 요건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교과목 기초자료 분석은 국립국어원의 도움을 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기관심사를 받은 한국어교육 전공 중 적합이나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171개 기관 203개 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세종학당의 통합교육관리 홈페이지(<http://lms.sejonghakdang.org/>)에서 각 기관의 심사시 제출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재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즉 조사대상 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개설하거나 운영중인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현재 자격취득을 위해 제시된 ‘과목 예시’(5개 영역 39개 과목)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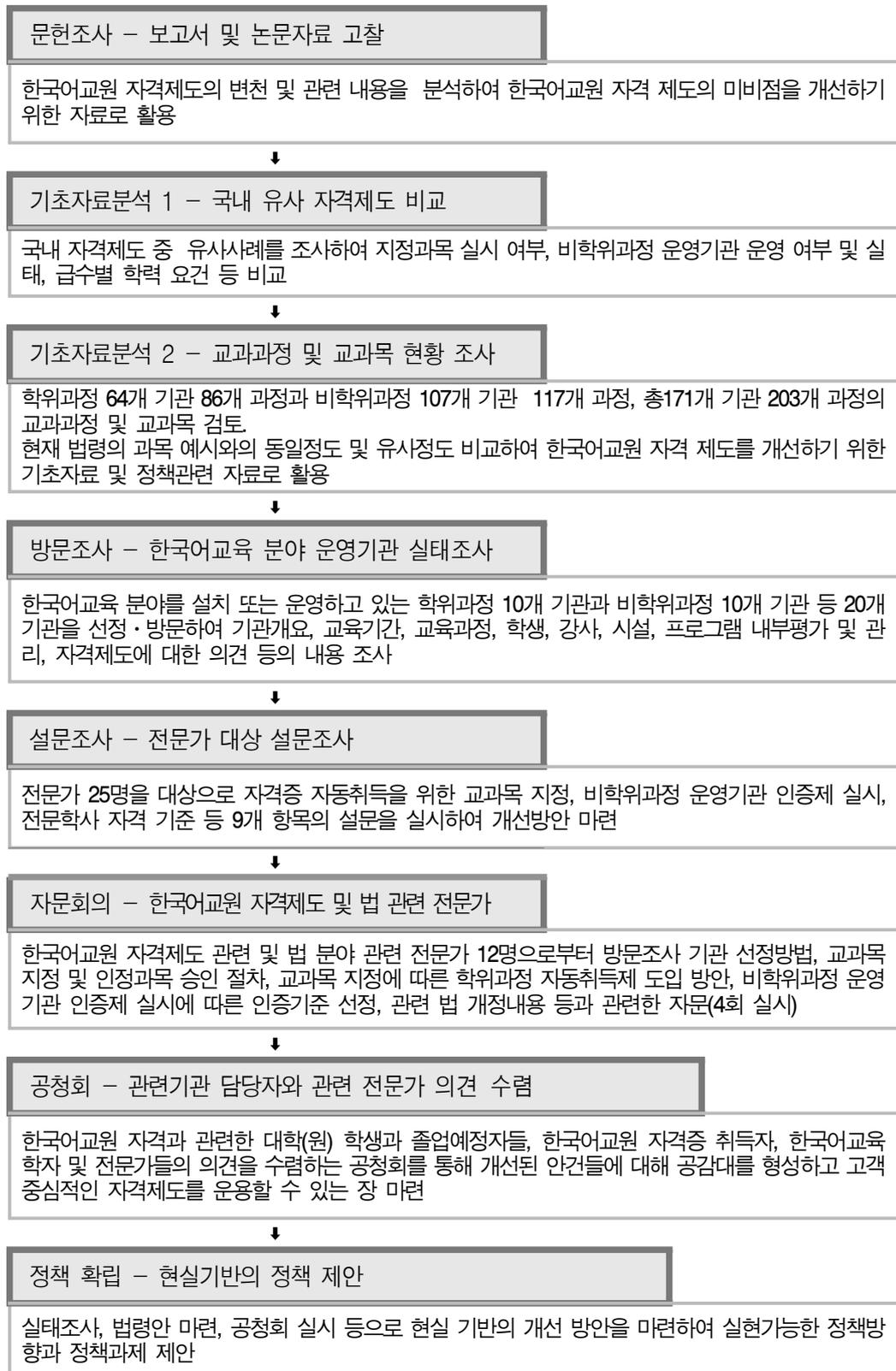
방문조사는 전국단위의 총 171개 기관 중 학위과정 10개 기관과 비학위과정 10개 기관 등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학위과정 방문조사는 온라인·오프라인, 학부와 대학원 등의 소속대학(학부·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기타대학원), 전공 설치 형태(일반과정·학과 간 협동과정·학점은행제·사이버), 지역별 중복자제 등의 기준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비학위과정 방문조사도 온라인·오프라인, 대학부설·사설기관, 국제교류원·한국어학당·문화원·평생교육원, 지역별 중복자제 등의 기준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각 구분에 따라 편중되지 않는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다. 조사내용으로는 기관개요(설립년도 및 총운영기간, 운영목적), 교육기간(일년내 학기수, 총학기, 교육시간), 교육과정(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준,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형태, 교재명 및 교재선택기준), 학생(학생 수 현황, 입학생 수 추이, 졸업현황 및 졸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졸업자 취업형태), 강사(전임강사 수, 교수진 구성, 전공 및 학위수준, 경력), 시설(비학위과정에 한해 강의실 수 및 강의실 크기, 강의기자재, 행정직원 및 행정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관리(출석관리 등 관리, 평가실시여부 및 결과), 그리고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현 교과과정 심사과정, 교과목 지정, 전문학사 도입,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 등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선정된 기관에 사전 접촉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였고 관련자료(교과과정 및 교과목, 사용교재 목록, 졸업자 취업현황 및 자격증 취득률, 전임교원 및 강사진 관련, 학생관리 관련, 강의안 등)에 대해서는 협조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수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한국어교원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 109명에게 질문하여 25명의 응답을 받았다. 자격증 자동취득을 위한 교과목 지정, 비학위과

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전문학사 자격기준 등과 관련하여 9개 항목의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회수하였다.

전문가 자문집단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심사위원 경험이 있거나 교원자격제도 도입 이전부터 한국어교육 관련 교육직과 연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자격제도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법률 관련 연구원 등을 포함하였다. 총 4회에 걸쳐 12명으로 부터 방문조사 기관 선정 방법, 교과목 지정 및 인정과목 승인 절차, 교과목 지정에 따른 학위과정 자동취득제 도입 방안,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따른 인증기준 선정내용, 관련 법 개정내용 등의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행정담당자와 교수 등 관련자들과 한국어학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한국어교육 자격제도 자동취득제와 관련된 지정교과목 내용,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도입과 인증 기준, 그리고 전문학사 자격요건 고려에 관련된 국어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정안과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1> 연구 절차



## 제2장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

제1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

제2절. 자격제도 취득 관련 문제

제3절. 국내 유사 자격제도 비교



# 제1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시행

##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령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에 근거한다. 국어기본법 제19조 1항에서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2항과 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와 검정 등과 관련해서 명시하고 있다.<sup>2)</sup>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는 ‘한국어교원’을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여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45학점)을 충족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하여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21학점)을 충족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18학점)을 충족한 후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필수이수시간(120시간)을 수료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sup> 단,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를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sup>4)</sup>

따라서 현재 학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통해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충족

2) 2010년 12월 일부개정된 시행령의 제 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와 제 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2010년 신규제정된 시행규칙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제 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제 4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 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제 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에서 한국어교원이 될 수 있는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시간, 자격 심사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3) 이때 해당 대학(원)의 한국어교육전공(학과)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전공 혹은 학과로 개설되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 외국대학(원)의 학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경우,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만 인정한다. 즉,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합산되지 않으며, 선수 과목 또한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4) 외국 국적자가 학위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학(원) 및 비학위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과 과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자료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현행 시행령에서 제시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과 필수이수시간은 영역별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

화, 한국어교육실습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영역별로 과목 예시가 제시되고 있으며 영역별 이수학점과 이수시간이 명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영역의 한국어학의 경우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등 8개 과목,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등 6개 과목,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경우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등 14개 과목, 4영역의 한국문화의 경우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등 8개 과목, 그리고 5영역의 한국어교육실습의 경우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개 과목이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시행령 제13조 제3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또한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원) 또는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은 그 기관의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 13조의 2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한국어교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급수 요건,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이에 대한 심사 권한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면,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그에 따른 심사기준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즉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한국어교원 심사 횟수,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는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심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고를 보고 한국어교원 자격을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의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개인별로 신청한다. 신청자가 대학(원)에서 주·복수·부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대신가능) 및 성적증명서, 비학위과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에 대한 성적증명서 또한 첨부하여야 한다.<sup>5)</sup>

5) 이는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2,3호에서 밝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외국 국적자가 학위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세부 심사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5개의 영역별 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1영역의 한국어학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의미, 어문규범 등의 내용을 다룰 것,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에는 일반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등을 가르칠 것,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경우에는 교수법 전반 또는 한국어의 음운, 문법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을 내용으로 할 것, 4영역의 한국문화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그리고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과목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분리하여 계산하며, 양성과정의 경우에 50분을, 원격교육의 경우에 25분을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sup>6)</sup>

자격 심의 절차와 자격증 교부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 고시 제3조는 교원 자격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고시 제2조는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한 심의를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필수이수학점과 시간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학(원)과 한국어교원양성기관에 별지서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격증에 대한 교부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령 서식 1의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한다.

6) 여기서 원격교육이라 함은 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시행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심사 공고, 서류접수, 서류 및 교과과정 심사, 자격증 교부에 이르기까지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립국어원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위원회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개인의 자격심사,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국어원은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1년에 3회로 그 심사횟수를 늘렸다. 심사 시기는 1차는 2월 말에서 4월 말, 2차는 8월 말에서 10월, 3차는 12월 중순에서 1월 사이이다. 2011년 5월 현재 지금까지 총 6,190명의 자격증 취득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sup>7)</sup> 2011년도의 경우 2월에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각각 8월과 12월에 예정하고 있다.

<표2>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심사 일정(2011년도)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예정)	3차 심사(예정)
심사 계획 공고	1.24	8.1	11.21
심사 신청 접수	2.21.~3.15.	8.29.~9.23.	12.19.~2012.1.6.
심사 결과 발표	4.15	10.21.	2012.1.27.
자격증 교부	4월말	10월말	2012.2월초

자료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홈페이지 내 게시물

심사신청 공고는 심사 신청서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45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각 교원의 급수에 따른 자격심사 대상과 요건, 제출 서류, 신청 절차, 접수 방법, 심사 절차, 결과발표 날짜 및 교부시기 등을 알린다. 서류 제출은 개인별로 자격심사 홈페이지(www.korean.go.kr/kteache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후, 출력한 신청서(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및 서명)와 관련 해당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졸업한 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이수한 자, 승급 대상자 등 세 부류로 나뉘어 자격심사를 실시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졸업한 학위과정 졸업

7) 국립국어원(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p.4

자들은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다. 120시간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는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비학위과정 이수증명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가 필요하다. 승급 대상자는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와 각 승급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sup>8)</sup>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3>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 등급·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kteacher>)에서 작성하여 출력)

구분	조건	신청등급	제출 서류
*법 시행 (05.7.28) 이후	대학(원) 입학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①졸업(학위)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①졸업(학위)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①이수증명서 원본 ②합격확인서 원본

자료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http://www.korean.go.kr)) 홈페이지 내 게시물

8)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 즉, 2005년 7월 28일 이전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건	신청등급	제출 서류
*법 시행 (05.7.28) 이전	대학(원) 입학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하되 3영역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①졸업(학위)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3영역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①졸업증명서 원본 ②성적증명서 원본
교육 경력자 또는 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급	경력증명서 원본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02~'04 한국세계화재단 시행)	3급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또는 이수한 후,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①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합격확인서 원본

서류를 접수한 국립국어원은 각 자격 요건과 서류를 검토한다. 심사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필수이수학점과 시간에 대해 검토하며, 각 대학(원)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기관심사 결과를 심사과정에서 적용한다. 기관심사는 2010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써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교과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국립국어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심사 결과를 교원자격심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이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심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교과과정과 교과목을 심사받았다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는 이 기관심사를 통해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결과를 받은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을 졸업 또는 이수한 심사대상자는 그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전에는 교원 자격 취득 희망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성적(이수)증명서상의 이수학점(시간)이 법정 필수이수학점(시간)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후 심사 방식이었으므로 양성기관의 착오로 영역별 필수이수과목 및 시간 개설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동일 과정의 이수자 전원이 불합격하거나, 학위과정의 경우 전공자 개인의 실수 등으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억울하게 불합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심사 전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심사하여 교육과정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기관 심사는 2010년 1월부터 현재(2011. 4 현재)까지 총 3차례 이루어졌으며, 3차까지 진행된 결과를 보면 64개 기관 86개 학위과정과 107개 기관 11개 비학위과정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이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의 결과를 받았다. 기관심사 대상으로는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원),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학점은행 등의 운영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전공과정을 신규 개설하거나,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할 때, 그리고 교과목을 신규 개설할 때 기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기관심사 결과를 판정받은 기관은 이후 심사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고, 대폭 개선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이 신규개설 또는 대폭 개편하였을 때는 한국어교육과정 심사 신청서, 한국어교육교과목 인정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교과목만을 새로 개설했을 때에는 한국어교육과정 심사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고 한국어교육 교과목 인정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신규 개설이나 개편 시, 한국어교육과정 심사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표4> 한국어교육 분야 기관심사 일정(2010년 이후)

구분	2010년 제1차	2010년 제2차	2011년 제1차	2011년 제2차(예정)
심사 공고	1.15.	6.21.	2010.12.20.	6.7.
1차 신청기간	1.15.~2.12.	7.1.~7.12.	1.10.~1.19.	7.4.~7.13.
1차 심사 결과 발표	3.22.	8.16.	1.28.	7.22.
이의 신청기간	3.19.~3.31.	8.16.~8.23.	1.31.~2.11.	7.29.~8.5.
2차 심사 결과 발표	4.29.	8월말/9월초	2.18.	8.12.

자료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홈페이지 내 게시물 재구성

<표5> 한국어교육 분야 기관심사의 대상 및 제출자료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자료 (누리-세종학당 입력)	비고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학위과정 신규 개설 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한국어교육 과정 심사 신청서(제출 자료: 과목 개설 현황, 교수요목 첨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국어교육 교과목 인정 신청서(제출 자료: 강의계획서 첨부)	이미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 신청 필요)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개설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국어교육 교과목 인정 신청서(제출 자료: 강의계획서 첨부)	
비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시(수업시수, 교과목 등 변경 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한국어교육 과정 심사 신청서(제출 자료: 양성과정 개요, 과목 개설현황, 교수요목 첨부)	

\* 제출 자료 중에 심사 신청서(교육과정/교과목/양성과정)는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입력으로 같음.

단, 해당하는 제출 자료는 시스템 입력 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자료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홈페이지 내 게시물

기관심사는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심사로 이루어진다. 우선, 온라인 기관심사에 접속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는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선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는 누리-세종학당 자료실에서 '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서식'을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국립국어원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다<sup>9)</sup>. 이 때 담당자는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전공과정의

9) 현재 기관 심사 신청은 접속 인증번호가 부여된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1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의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2010),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p.33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운영 책임자가 지정한 자여야 한다. 만약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인증번호를 받아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담당자는 인증번호로 누리-세종학당에 접속하여, 교과과정 및 교과목 심사를 클릭하고 학과명, 설립년도 등에 대한 학과정보와 교과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이때 과목명, 과목 개설일, 교재 등에 대한 정보와 강의 주요내용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등 기관개요 등에 관해 작성하고,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개설현황, 과목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정 소개 등에 관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결과는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sup>10)</sup>,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심은 부적합과 보류 결과로 판정받았을 시에만 가능하다. 즉 조건부 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재심의 요청은 불가하며,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자료 : 국립국어원(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그림 2> 한국어교육 분야 기관 심사 체계도

10)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개편을 통해 새로운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에서 기관 심사 신청 및 변경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p.34 참조

## 제2절. 자격제도 취득 관련 문제

###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국내 64개 기관 86개 학위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관련 교과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행령 제13조에서 밝히고 있는 과목 예시와 동일하게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가 약 51%(전체 2,301개 과목 중 1,180개 과목)였다. 각 영역별로는 1영역인 한국어학의 경우 약 57%(전체 400개 과목 중 226개 과목),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 약 61%(전체 261개 과목 중 159개 과목),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경우 약 60%(전체 1,050개 과목 중 632개 과목), 4영역인 한국문화의 경우 약 31%(전체 468개 과목 중 147개 과목), 5영역인 한국어교육 실습의 경우 약 13%(전체 122개 과목 중 16개 과목)였다.

과목 예시와 유사한 과목명<sup>11)</sup>으로 개설된 과목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73%(전체 2,301개 과목 중 1,677개 과목)로 늘어났으며, 각 영역별로는 1영역의 한국어학의 경우 약 83%(전체 400개 과목 중 332개 과목),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 약 81%(전체 261개 과목 중 211개 과목),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경우 약 84%(전체 1,050개 과목 중 886개 과목), 4영역의 한국문화의 경우 약 34%(전체 468개 과목 중 164개 과목),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의 경우 약 69%(전체 122개 과목 중 84개 과목)였다. 그 밖에 과목 예시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유사과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2영역의 담화분석, 3영역의 한국어문학 교수법, 한국어의미교육론, 멀티미디어와 한국어교육 등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각 학위과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학에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거나 대학원과정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그리고 기타대학원 등을 중복해서 개설하고 있는 경우 교과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거나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현재 시행령 제13조에서 밝히고 있는 과목 예시와 동일한 과목으로 수업을 개설한 경우가 약 81%(전체 3,465개 과목 중 2,794개 과목)로, 학위과정보다 법령에 나타난 과목 예시를 더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1영역인 한국어학의 경우 약 84%(전체 836개 과목 중 702개 과목),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 약 95%(전체 419개 과목 중 396개 과목),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11) 과목 예시와 유사한 과목명은 <표6>과 같다.

<표6>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의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영역	과목 예시	과목 수	비율	유사과목	과목 수	총과목 수	비율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14	5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의이해 등	56	70	83%	
	한국어음운론	40		국어 음운론 연구, 한국어음성·음운론 등	9			49
	한국어문법론	42		국어문법론특강, 한국어문법의이해 등	7			49
	한국어어휘론	14		현대국어어휘론연구, 국어어휘론특수연구 등	6			20
	한국어의미론	29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의미의이해 등	10			39
	한국어화용론	23		국어 화용론 연구	1			24
	한국어사	16		국어사연구, 한국어발달사 등	12			28
	한국어어문규범	48	한국어어문규범과글쓰기, 한국어교사를위한문법및어문규범 등	5	53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24	61%	응용언어학과한국어교육, 응용한국어학연구 등	6	30	81%	
	언어학개론	30		언어학특강, 언어학의 이해 등	9			39
	대조언어학	39		대조언어학이론과실제, 대조언어학과외국어습득론 등	11			50
	사회언어학	22		사회언어학과KFL연구, 사회언어학과 화법연구 등	3			25
	심리언어학	6		심리언어학과KFL연구	1			7
	외국어습득론	38	언어습득론연구, 현지외국어습득의 이해 등	22	60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53	60%	한국어세미나, 한국어교육학연구 등	58	111	84%	
	한국어교육과정론	48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과평가 등	7			55
	한국어평가론	40		한국어능력평가론, 한국어교육평가 등	23			63
	언어교수이론	27		한국어교육과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수방법론 등	43			70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66		한국어말하기·듣기교수법, 한국어말하기교육론 등	39			105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57		한국어 읽기·쓰기 교수법, 한국어지도론2(읽기, 쓰기) 등	27			84
	한국어발음교육론	63		영역별한국어교육II: 발음, 한국어발음교육론세미나 등	6			69
	한국어문법교육론	81		영역별한국어교육I: 문법, 한국어 문법론과 문법교육연구 등	6			87
	한국어어휘교육론	58		영역별한국어교육III: 어휘, 한국어어휘교육론세미나 등	4			62
	한국어교재론	69		한국어 교재 구성, 한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등	32			101
	한국문화교육론	38		영역별한국어교육V: 문화, 한국전통문화교육론 등	8			46
한국어한자교육론	17	한자교육론	1	18				
한국어교육정책론	6	-	0	6				
한국어번역론	9	-	0	9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14	31%	한국 민속의 이해, 한국인의삶과민속	6	20	34%	
	한국의 현대문화	30		-	0			30
	한국의 전통문화	29		한국어교육과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세미나 등	8			37
	한국문화개론	18		-	0			18
	전통문화현장실습	6		한국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체험실습	2			8
	한국현대문화비평	6		-	0			6
	현대한국사회	9		한국사회의 이해	1			10
한국문학의이해	35	-	0	35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참관	1	13%	-	0	1	69%	
	모의수업	4		-	0			4
	강의실습	11		한국어교육실습	68			79

\* 각 교과목의 비율과 이를 더한 전체 비율의 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교과목의 비율 계산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했기 때문임.

\*\* 세종학당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재구성

한국어교육론의 경우 약 77%(전체 1,427개 과목 중 1,094개 과목), 4영역인 한국문화의 경우 약 76%(전체 419개 과목 중 317개 과목), 5영역인 한국어교육 실습의 경우 78%(전체 364개 과목 중 285개 과목)였다. 과목 예시와 유사한 과목명<sup>12)</sup>으로 개설된 과목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91%(전체 3,465개 과목 중 3,147개)이고, 각 영역별로는 1영역의 한국어학 영역 약 92%(전체 836개 과목 중 772개 과목),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약 98%(전체 419개 과목 중 410개 과목),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약 92%(전체 1,427개 과목 중 1,316개 과목), 4영역의 한국문화 영역 약 87%(전체 419개 과목 중 364개 과목),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 약 78%(전체 364개 과목 중 285개 과목)였다. 그 밖에 과목 예시에 포함되지 않고, 유사과목으로 볼 수 없는 기타의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 1영역의 한국어 형태론, 3영역의 한국어교수학습설계, 4영역의 한국역사의 이해, 그리고 5영역의 교안작성법 등이다.

이와 같이 학위과정에서 과목 예시에 따르는 경우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1,2,3영역보다는 4영역과 5영역의 일치도가 낮았으며, 유사과목을 포함한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과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일치도는 60%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유사과목까지 포함해서는 90%를 넘는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과목 예시에 대한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학위과정에 비해 높았다. 즉, 5개의 모든 영역에서 75%이상의 일치비율을 보여주었다. 영역별로 비교했을 때 학위과정과 마찬가지로 4영역인 한국문화 부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어 타 영역에 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에 그 일치도가 높은 영역은 1영역인 한국어학,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이었다. 이 두 영역에서 과목 예시와의 일치도는 85% 이상이었으며, 유사과목까지 포함해서는 90%를 넘는 매우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2영역에 대한 일치도가 가장 높았으며, 1영역과 3영역 또한 그 일치도가 타 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두 과정 모두에서 현 법령의 4영역과 5영역의 과목 예시를 따르는 비율은 낮았으며, 특히 학위과정에서는 4영역인 한국문화 영역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 과목 예시와 유사한 과목명은 <표7>과 같다.

&lt;표7&gt; 한국어교육 분야 비학위과정의 과목 예시 교과목 운영 현황

영역	과목 예시	과목 수	비율	유사과목	과목 수	총과목 수	비율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57	84%	한국어학개론	44	101	92%	
	한국어음운론	108		한국어 음성·음운론	1			109
	한국어문법론	114		-	0			114
	한국어어휘론	72		한국어 어휘의미론, 한국어 어휘론 및 형태론	5			77
	한국어의미론	82		한국어의미·화용론	7			89
	한국어화용론	68		한국어텍스트·화용론	1			69
	한국어사	85		한국어학사, 한국어의 기원과 역사, 국어사, 현대한국어사	5			90
한국어어문규범	116	한국어규범, 한국어 어문규정과 정책, 외래어표기법, 한글 맞춤법의 이해, 맞춤법, 로마자표기법	7	123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37	95%	-	0	37	98%	
	언어학개론	86		-	0			86
	대조언어학	87		대조언어학(한·중), 대조언어학(한·일), 한영, 한중, 한일 대조연구	4			91
	사회언어학	72		사회언어학과 한국어교육, 사회/응용 언어학	2			74
	심리언어학	22		-	0			22
외국어습득론	92	제2언어습득론, 언어습득론	8	100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90	77%	한국어교육 특강	3	93	92%	
	한국어교육과정론	91		-	0			91
	한국어평가론	92		한국어 교육 평가론, 한국어능력평가론	6			98
	언어교수이론	68		외국어교수이론	2			70
	한국어표현 교육법(말하기, 쓰기)	92		한국어말하기교수법, 한국어쓰기교수법, 한국어발음클리닉(말하기), 한국어침삭클리닉(쓰기)(한국어 듣기 말하기 교수법)	79			171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87		한국어 듣기 교수법, 한국어 읽기 교수법, 한국어시청클리닉(듣기), 한국어독해클리닉(읽기), (한국어 읽기 쓰기 교수법)	78			165
	한국어발음교육론	107		한국어의표준발음과발음교육	1			108
	한국어문법교육론	112		요소교육론(어휘, 문법)	1			113
	한국어어휘교육론	98		-	0			98
	한국어교재론	92		한국어교재분석 및 개발, 교재분석(중급)	2			94
	한국문화교육론	64		한국어문화교육론	27			91
	한국어한자교육론	43		-	0			43
한국어교육정책론	48	한국어정책론, 한국어교육의현황과과제, 한국어교육의현황과전망, 한국어교육 현황	7	55				
한국어번역론	10	-	0	10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23	76%	한국민속문화론, 한국의 전통과 민속	3	26	87%	
	한국의 현대문화	62		-	0			62
	한국의 전통문화	73		-	0			73
	한국문학개론	42		한국문학의이해	1			43
	전통문화현장실습	19		한국문화현장실습, 문화체험, 한국문화실습	4			23
	한국현대문화비평	12		-	0			12
	현대한국사회	29		한국사회의이해, 한국의 문화와 현대 한국사회	3			32
한국문학의이해	57	한국현대문학의이해, 한국고전문학의이해, 한국현대문학개론, 고전문학개론, 한국문학의원형, 한국현대문학의 세계, 한국고전문학의세계, 한국시가문학개론, 한국의 신화와 만담, 한국 고전문학의 세계, 현대문학(한국어 번역론)	36	93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참관	109	78%	-	0	109	78%	
	모의수업	82		-	0			82
	강의실습	94		-	0			94

\* 각 교과목의 비율과 이를 더한 전체 비율의 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교과목의 비율 계산 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했기 때문임.

\*\* 세종학당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재구성

## 2. 한국어 교원 자격 요건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으로 한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이수자에게 2급 자격을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급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 있는 학위과정의 경우에 부전공한 자, 그리고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필수이수학점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즉, 전문학사 또는 고졸 학력자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를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는 3급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에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입학자에 대해 학력이나 전공에 대한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은 고유의 입학 제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급 자격 취득요건의 경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120시간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2급 자격 이상의 자격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전공자로서 최소 18학점(대학원의 필수이수학점)에서 최대 45학점(대학의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필수이수학점)까

<표8>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요건

한국어 교원	자격 요건
1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005년 7월 28일 법 시행 이전 대상자 요건, 외국 국적인, 승급 요건 제외)
3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2005년 7월 28일 법 시행 이전 대상자 요건, 외국 국적인, 승급 요건 제외)

자료 : 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1항

지 이수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비학위과정의 필수이수시간이 너무 짧고 운영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에 3급 이하 또는 3급을 대체할 수 있는 준교원 급의 신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 2008년 수행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한국어교원에서 준교원을 설정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많은 이주민지원센터나 외국의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한국어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준교원급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당시 조사에서도 준교원급의 신설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고, 가칭으로 ‘한국어지도사’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그리고 (가칭) 한국어지도사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교원 급의 자격제도는 자원봉사자에게 한국어교육 강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자격증이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원봉사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어교원이란 외국인과 교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육의 대상이 동일한테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법적인 이유 등으로 신설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하였다. 그 대신 이미 한국어교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한국어교육의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포함시켜 국어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자원봉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sup>13)</sup>

결국,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원의 자격은 처음 2005년도 시행되었던 때와 동일하게 1,2,3급으로 부여된다. 2급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전공/복수전공)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고 3급의 경우 대학(부전공)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일정 시간 관련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1급은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시행령 제 13조 제1항). 여기서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시행령 제 13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다.

13) 국립국어원(2008),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pp.81~129 참조

### 3. 비학위과정의 운영 및 관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기관은 학위과정 운영기관 외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허용된다. 즉, 대학 및 대학원(전공/복수전공, 부전공)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일정 시간 관련과목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비학위과정은 대학부설기관과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10년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 보급용 책자로 제작·보급된 바 있다.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및 학사 관리, 교과목 강사, 일반 사항으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교육과정은 교육 기간 및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교재 등의 운영지침을 다루고 있다. 비학위과정인 단기양성기관의 전체 교육 기간은 총 15주 이상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합시험 시간이나 수료식 등과 관련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 시간으로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구성할 것을 주의시키고 있다. 그리고 교과목 편성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서 정한대로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며, 각 과목명에 영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목 중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해당하는 강의 참관은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은 두 교과목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교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의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했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목 편성시 세미나나 워크숍과 같은 주제 발표와 관련된 과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과목, 종합시험, 수료식 등에 포함된 시간 등은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으로 불인정되는 예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수업과 관련한 지침사항은 교과목 내용과 한국어교육 실습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5영역인 한국어교육 실습 중 강의 참관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하고, 횟수는 초·중·고급별 각 1회 이상이 바람직하다. 수준별 참관이 어렵더라도 최소

한 4시간 이상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며, 강의 참관 전후에 참관 일지 작성, 참관 평가 등 참관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의수업은 외국인 학습자, 양성과정 동료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모의수업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강의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하고,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강의 실습 전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에 대해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가 및 학사 관리는 출석관리와 평가, 그리고 수료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출석 관리는 원칙적으로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 조건으로 하고 수강생의 출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의 평가는 필기시험으로 하며, 한국어교육실습은 수강생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수료 기준은 출석 기준에 부합하고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 온라인, 온·오프라인의 양성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

넷째, 교과목 강사의 자격 및 강사진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강사의 자격으로는 1,2,4 영역의 경우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나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영역의 경우에는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나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5영역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강사진은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3영역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10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교육 기본 시설, 행정직원, 프로그램 평가,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 및 이수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다루고 있다. 교육 기본 시설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은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수강 인원에 적정한 강의실이어야 한다. 또한 전용 강의실은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

거나 지원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매 학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지원 자격 및 학력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수증명서는 이수기간, 이수과목, 이수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은 교과과정부터 행정 일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기관 담당자들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과 주의할 점을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지침이 하나의 안내서로서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권유 또는 권장하는데 그칠 뿐이라는 점이다. 이 지침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제적인 규정이며 한국어교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효력이나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제3절. 국내 유사 자격제도 비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제도<sup>14)</sup>이며, 산업인력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제도에 속한다. 국내 국가전문자격제도 중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이 지니는 교육적 측면, 문화적 측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측면에 주목하여 지정교과목 실시 여부, 비학위과정 양성기관 운영여부 및 실태, 급수별 학력 요건 등을 관련된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한다.

### 1. 교과과정 및 교과목 지정

유치원 정·준교사, 초·중등 정·준교사는 ‘기본이수과목’ 등의 명칭으로 교육자격검정령 등에서 교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에서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정한 기본이수과목을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유치원 정·준교사, 초·중등 정·준교사 자격제도에서는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두고 있으며, 이미 대학에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과목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근거서류(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로 보관하고 운영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교육부에 보고하지는 않으나 교육부에서 1년 1회 이상 기관심사를 할 때 검토 서류 내용에 포함된다.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관련 교과목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관련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의 범위를 정해 고시하고 있다. 고시한 인정과목 외에는 유사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는 해당하는 과목 명칭으로 과정개설 시에만 자격증 취득 관련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법 대상자가 유사과목을 수강한 경우 유사과목확인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14) 여기서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자격기본법」제 2조 (정의) 참조). 그리고 ‘자격제도’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국가전문자격제도 구분되고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즉 국가자격은 국가가 자격증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국가가 신설·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운영한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보육관련 교과목과 이수학점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에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관련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동일교과목 심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보육실습 과목의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된다. 보육교사는 학위과정인 대학에서 교육받을 경우와 비학위과정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두 과정은 교과 영역은 동일하나 이수해야 할 교과목과 학점 수에서 차이가 난다.

보건교육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교육 관련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정된 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의교육관련 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그리고 유사과목으로 볼 수 있는 과목명을 ‘~ 학’, ‘~(개, 원)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등으로 몇 가지 명칭을 제시하여, 제시된 명칭이 붙은 경우에는 심사 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한다.

사서의 경우에는 사서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사서자격 교과과정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인정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법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동일교과목 인정과목을 확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상으로 공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과목명을 지정하고 교육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과목명만 제시하는 데 비해 요양보호사의 경우 과목명과 그 과목명에 따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내용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이론과 실기연습의 비중이 같았으며 실기연습 이외에 현장실습까지 포함하여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lt;표9&gt; 유사자격제도의 지정교과목 실시 여부

자격제도	지정교과목 실시유무	인정과목 유무	동일교과목 심사 유무	인정과목 및 동일교과목 심사 기관
유치원 정·준교사	○	×	×	×
초등 정·준교사	○	×	×	×
중등 정·준교사	○	×	×	×
평생교육사	○	○	×	평생교육진흥원
보육교사	○	×	○	자격검정위원회
보건교육사	○	○	○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관련 법인·단체
사서	○	×	×	×
사회복지사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요양보호사	○	×	×	×
한국어교원	×	×	×	×

## 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

국내에서 학위과정 이외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총 16개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간호조무사, 안마사, 요양보호사, 응급 구조사 2급, 조산사<sup>15)</sup>,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2급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준교사 자격취득자도 배출하였으나 현재 인력 수급 등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위과정 외에 2개의 사서교육기관에서 준사서를 배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공장정비사, 기관사, 자가용조종사, 통신사, 운항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자격증에 대해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sup>16)</sup> 여성가족부는 비학위과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교사와 보건교육사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초중등 정·준교사의 경우 수급 등의 문제로 임시 교원양성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사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서는 비학위과정이 운영 중에 있다. 평생교육사의 경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통해 2급과 3급 자격증을 따는 것이 가능하다. 2급은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관련과목 30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3급은 21학점이상 이수했을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비학위과정 양성기관을 이수하여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사서의 경우 지정교육기관에서 정사서 2급과 준사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정사서 2급은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고, 준사서는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통해 2급과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급은 학사졸업이상의 학력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3급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가능하다.<sup>17)</sup>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15) 의사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전문인으로, 의사의 업무를 돕고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 등을 함

16) 국토해양부는 지정교육기관과 지정 전문교육기관이라는 두 가지의 용어를 사용한다.

17) 단,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했을 때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http://lic.welfare.net>)

<표10> 유사자격제도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운영 여부

자격제도	1급	2급	3급	준--	비학위 양성기관
유치원 정·준교사	X	X	-	X	X
초등 정·준교사	X	O	-	O	임시 교원양성기관 (미운영)
중등 정·준교사	X	O	-	X	
평생교육사	X	O	O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보육교사	X	X	O	-	교육훈련시설
보건교육사	X	X	X	-	X
사서	X	O	-	O	지정교육기관
사회복지사	X	O	O	-	교육훈련기관
요양보호사	-	-	-	-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X	X	O	-	한국어교원 단기양성기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 ‘-’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함

유사자격제도 중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지정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은 지정신청 서류 제출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지정신청 서류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교수 요원 채용 계획서, 시설·설비 현황표, 교육과정 편성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및 과정별 정원표,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를 구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이 결정된 기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지정 절차는 평생교육사의 과정과 비슷하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후에 지정확인을 받는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장 심사가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지정 과정에는 포함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교육훈련시설 지정 신청서, 법인의 정관/등기부등본/출연금에 관한 서류, 건축물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 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등이며 이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교육훈련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

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심사 시 시·도의 보육교사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지정을 억제하며, 신규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규 지정이 결정되면, 교육훈련시설을 건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사한다. 그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 지정을 결정한다. 지정된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양식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통지한다.

요양보호사 비학위과정 교육기관의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sup>18)</sup>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때 통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시·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로 제출한다. 위의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정기준에 따라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확인한다. 이때 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시설기준, 학습교구기준, 직원배치 기준을 따른다. 시설기준에는 강의실·사무실의 면적,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며, 학습교구기준에는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 휠체어, 이동욕조 등과 같은 기자재의 수,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등의 종류와 갖추어야 할 개수를 제시하고 있다. 직원배치 기준은 교수요원의 수, 전공,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18)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시설 및 직원기준, 강사기준을 갖추고 시·도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에게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여 현장 실사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운영했다. 이같은 신고제에 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010년 4월 26일부터는 지정제로 전환되었다. 조은숙 (2010),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교육생의 의식연구,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논문, p.12 참조

### 3. 급수별 학력 요건

한국어교원의 자격부여는 1,2,3급으로 나뉜다. 급수별로 학력별 차이를 살펴보면, 1급은 승급을 통해 취득 가능하며, 2급은 학사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졸업한 경우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급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필수 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하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거나 학위과정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졸업했을 경우 해당된다.

한편, 유치원 정·준교사, 초·중등 정·준교사의 급수는 정교사 1급과 2급, 준교사로 나뉜다. 1급은 승급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치원 정교사 2급의 경우 학사, 석사, 전문대학의 경우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유치원 준교사는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검정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자격제도에서는 박사과정과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의 학사과정과 교육대학원 등의 석사과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취득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면 가능하다. 준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시 가능하다. 단, 여기서 초·중등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중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자격 취득은 현재 법령 상으로만 존재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박사 학력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등교사 정교사 2급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등에서의 학사과정과 교육대학원 등의 석사과정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준교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 시 가능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고졸, 전문학사, 박사학력에 따른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생교육사의 급수는 1,2,3급으로 나뉘며 1급은 승급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 2급은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 가능하다. 3급은 대학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이면 가능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사의 경우 고졸과 전문학사에 대한 학력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육교사의 급수는 1,2,3급이 존재하며 1급의 경우 승급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2급은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했을 경우

취득 가능하고, 3급은 고졸이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면 가능하다. 보육교사의 경우 학사와 석사, 박사 학력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11> 유사자격제도의 급수별 학력비교

자격제도	1급	2급	3급	비고	
유치원 정·준교사	승급	전문학사, 학사, 석사	-	준교사	x
초등 정·준교사	승급	전문학사, 학사, 석사	-	준교사	고졸, 학사(방송통신대학)
중등 정·준교사	승급	학사, 석사	-	준교사	학사 (공업·수산·해양 · 및 농공계 학과)
평생교육사	승급	학사(30학점) 석사, 박사	학사 (21학점)	-	
사서	박사	학사, 석사	-	준사서	전문학사, 학사(부전공)
사회복지사	승급 (국가고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고졸, 전문학사	-	
보육교사	승급	전문학사	고졸	-	
요양보호사	-	-	-	학력 제한 없음	
한국어교원	승급	학사, 석사, 박사	학사(부전공)	-	

\* '-'의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 등급임을 의미함

\* 'x'의 표시는 자격요건에 학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함

\* 보건교육사는 전 급수 고시인증제로, 학력구분 없음

사서의 급수는 정사서 1,2급과 준사서로 나뉜다. 정사서 1급은 승급과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전공의 박사학위 취득을 통해 가능하다. 정사서 2급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준사서의 경우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면 가능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서는 고졸자의 경우에 따른 취득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나뉘며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2급은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모두 취득이 가능하며,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대학졸업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졸업자로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 취득가능하다. 3급은 전문대학졸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이거나 고졸인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이면 취득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고졸에서 박사학력 소지자의 경우까지 가장 폭넓게 취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급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력 제한도 없다. 요양보호사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내 유사자격제도에서 나타난 학력별 차이를 정리하면 1급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는 승급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2급 이하의 급수에서는 학위과정 또는 지정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1,2,3급의 3단계로 나뉘어 있는 급수체계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그리고 한국어교원 등이 있으며, 1, 2급과 준급의 3단계로 나뉘는 것은 유치원·초중등 교사 자격증과 사서 자격제도였다. 단, 초·중등 교사 자격증의 경우 현재 준급 취득자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급수체계를 1,2,3급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의 경우 학력별 급수 차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학·석·박사)의 학위를 가진 자는 무시험검정으로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자격 취득이 가능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초·중등 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유사하였다.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자가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자라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면, 타 교육관련 자격증인 유치원 교사, 초·중등 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유사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의 학력에 따른 자격 취득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사서 및 사회복지사에 비하면 학력별 체계가 미흡한 편이나, 급수에 따른 학력별 차이가 없는 요양보호사에 비하면 훨씬 그 체계가 단계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3급에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입학자에 대한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고졸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력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학력별 급수 체제와 학력 차별에의 문제는 현행 대로 유지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의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대한 필요성은 시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 제3장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운영실태 조사

---

제1절. 학위과정 운영실태

제2절. 비학위과정 운영실태

제3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제1절. 학위과정 운영실태

### 1. 시도별 학위과정 운영실태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0년 1년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교과과정 심사를 신청한 총 64개 대학(원)의 86개 과정을 분석하였다.<sup>19)</sup> 이는 현재 미운영 중인 6개 과정과 교과과정 심사결과가 ‘부적합’ 또는 ‘보류 판정’이 난 10개 과정의 수를 제외한 숫자이다.

64개의 대학(원)에 속해있는 86개의 학위과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으로 독립해서 전공이 설치된 경우, ‘국어국문학과’ 전공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어교육학과’, ‘교육학과’ 등 교육관련학과 내 전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학과’나 ‘한국어지도학과’ 등 유사한 전공명으로 설치된 경우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온라인이나 학점 은행제 등의 형태도 있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으로 자격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공명과 거의 동일한 전공명으로 설치된 경우는 총 17개 과정, ‘국어국문학과’ 전공 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총 16개 과정, ‘국어교육학과’ 등 교육학과 내 전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총 7개 과정, ‘한국어학과’나 ‘한국어지도학과’ 등으로 유사한 전공명으로 설치된 경우는 총 32개 과정, 온라인이나 학점 은행제 등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는 총 12개의 과정이 있었으며, 협동과정 등이 속하는 기타분류로 2개 과정이 있었다.<sup>20)</sup>

지역별로는 강원 2개 과정, 경기 6개 과정, 경북 4개 과정, 광주(광역시) 4개 과정, 대구 5개 과정, 대전 5개 과정, 부산 7개 과정, 서울 31개 과정, 울산 1개 과정, 인천 2개 과정, 전남 3개 과정, 전북 4개 과정, 충남 9개 과정, 충북 3개 과정이 속했다. 서울의 경우가 약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충남(10.47%), 부산(8.14%), 경기(6.98%), 대구(5.81%), 대전(5.81%), 광주(4.65%), 경북(4.65%), 전북(4.65%), 충북(3.49%), 전남(3.49%), 강원(2.33%), 인천(2.33%), 울산(1.16%) 순이었다.

19) 동일 기관에서 두 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도 1개 기관으로 헤아려 64개의 기관임

20) [부록2] 참조

<표12> 전국 시도별 학위과정 개수

구분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과정수 (개)	2	6	4	4	5	5	7	31	1	2	3	4	9	3
비율 (%)	2.33	6.98	4.65	4.65	5.81	5.81	8.14	36.05	1.16	2.33	3.49	4.65	10.47	3.49

\* 세종학당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재구성

## 2. 방문조사 결과

### 1) 조사방법

전국 64개 기관의 86개 학위과정 중 온라인·오프라인, 학부와 대학원 등의 소속대학(학부·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기타대학원), 전공 설치 형태(일반과정·학과 간 협동과정·학점은행제·사이버), 지역별 중복자제 등의 기준으로 10개 기관 17개 학위과정을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관련 기관의 의견이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특정 지역의 의견이 강조되는 결과 또한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방문조사를 실시한 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총 10개 기관의 17개 과정으로, 한 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13> 학위과정 조사 현황

번호	구분 1		구분 2				구분 3				지역	과정수
	온라인	오프라인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기타대학원	일반과정	협동과정	학점은행제	사이버		
1	x	o	o	o	x	x	o	o	x	x	대구	2
2	x	o	o	x	x	x	x	x	o	x	경기	1
3	x	o	o	x	x	o	o	x	x	x	충남	2
4	x	o	x	x	o	o	x	x	o	o	서울	3
5	x	o	x	o	x	x	x	o	x	x	부산	1
6	x	o	o	x	x	x	o	x	x	x	광주(광역시)	1
7	x	o	x	o	o	x	x	o	o	x	서울	2
8	o	x	o	x	x	x	x	x	x	o	서울	1
9	x	o	o	o	o	x	o	o	o	x	부산	3
10	x	o	x	x	o	x	x	x	o	x	충북	1

\* 기타 대학원에는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인문산업대학원, 국제대학원 등이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다. 조사방식은 질문지<sup>21)</sup>를 미리 해당 기관에 송부한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과 담당자 또는 담당교수를 만나 질문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 방식이었다. 질문 문항은 2010년 제작·배포된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운영지침’을 참고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내용과, 교육기간, 교육과정, 학생, 강사, 내부 평가 실시 여부 등 학위과정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이번 연구와 관련하여 현 교과과정 심사 방식, 교과목 지정,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전문학사 요건 도입에 대한 의견 또한 질문하였다. 특히 학위과정은 본 연구와 관련해서 교과목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관이므로 교과과정을 중점으로 질문하고, 관련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표14〉 학위과정 방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관 개요	설립년도, 총 운영기간, 운영목적
교육 기간	일년 내 학기 수, 총 학기, 교육시간(주/야간),
교육과정	교과과정 및 교과목,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 교재
학생	학생 수 현황, 입학생 수 추이, 졸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졸업자 취업 형태/분야/취업률
강사	전임강사 수, 교수진 구성, 전공 및 학위수준, 경력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관리	출석 및 성적 관리, 프로그램 내부 평가 실시 여부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현 교과과정 심사 방식의 개선, 교과목 지정, 전문학사 요건 도입,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등 관련

21) [부록 3]참조

## 2) 조사 결과

### 가. 운영전반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목표는 대부분 전문가로서 한국어교원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한국어교육현장에 적용할 학습 자료 및 교수법 등에 관한 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도 설정되고 있다. 10개 기관의 17개 학위과정이 설립된 연도를 비교하였을 때 1995년에서 1999년 사이 2개 과정,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5개 과정, 2006년 이후 10개 과정으로,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작된 이후에 많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운영목적으로는 한국어교원 양성이 10개 과정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구자 양성이 2개 과정, 교원과 연구자 양성이 1개 과정, 언어 및 문화 교수, 한국어교육 등 기타 목적이 4개 과정이었다. 즉, 학위과정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및 한국어교육 연구자 양성 등 교육관련 전문가 양성이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인 학위과정의 총 교육기간은 학부의 경우 8학기(4년) 5개 과정, 일반대학원의 경우 4학기(2년) 7개 과정, 일반 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5학기 3개 과정, 6학기 1개 과정, 기타 경우 1개 과정 등이었다. 교육시간의 경우 학부와 일반대학원, 기타대학원의 경우에는 주간으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교육대학원의 경우 야간으로 운영되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학위과정처럼 1년 2학기제<sup>22)</sup>로 운영되었으며, 총 교육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타 기관에서도 병행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완료를 위해 걸리는 기간은 개인사정에 따라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학생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출석 체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적 평가는 정기 시험, 출석, 리포트, 그 외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한 학기가 마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제 등을 통해 학과 또는 담당교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나 취득률은 인터뷰한 담당자 및 담당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졸업 후 한국어교원과 연관된 교육관련 직업을 구하려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관련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무역업 또는 한국문화와 관련된 직종으로의 취업이 많았다. 학생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는 중국 학생들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보다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 외국인(특히 중국인) 학생들이 많았으며, 방문

22) 조사한 학점은행제의 경우 1학기는 15주로 구성되어 있었음

학교 중에는 중국 학교와 협약을 맺어 '2+2 시스템', 자국에서 2년과 한국에서 2년의 과정을 거쳐 복수 학사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었다.

<표15>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1)

구분	설립 년도	운영 목적	총 교육기간	학생			강사			평가 및 관리
				학생 수 추이	자격증 취득률	취업 분야	전임 강사 수	경력	학위 수준	
1	① 2003	언어 및 문화 교수	8학기	유지	100%	한국어강사, 문화관련	5명	5년 이상	박사	실시
	② 2007		4학기							
2	2009	교원양성	학점 총족 시	유지	60~80 %	한국어강사	1명	5년	박사	실시
3	① 2006	한국어 교육	8학기	증가	100%	한국어강사	4명	5년 이상	박사, 박사 수료	실시
	② 2009		4학기							
4	① 1997	교원양성	5학기	유지	100%	한국어강사	1명	5년 이상	박사	실시
	② 2006	연구자양성	4학기	증가	100%	한국어강사, 문화관련	6명	5년 이상	박사	실시
	③ 2010	교원양성	4학기	유지	0%	-	3명	5년 이상	박사	실시
5	2007	교원양성	4학기	증가	100%	한국어강사	0명	-	-	실시
6	2008	교원양성	8학기	감소	0%	-	2명	-	-	실시
7	① 2006	연구자, 학자 양성	4학기	증가	100%	한국어강사, 유학	15명	5년 이상	박사, 박사 수료	실시
	② 1999	교원 양성	5학기	감소						
8	2005	교원 양성	8학기	증가	100%	한국어강사 문화관련	3명	5년 이상		실시
9	① 2004	교원 양성	8학기	유지	100%	봉사, 기업	9명	-	박사	실시
	② 2005	교원과 전문연구자 양성	4학기	유지	100%	한국어강사, 기타	7명	10년 이상	박사	실시
	③ 2003	교원 양성	5학기							
10	2007	교원 양성	6학기	감소	95%	한국어강사 등	12명	0년	박사	실시

학위과정의 경우 모두 전임교수들을 두고 있었으며, 1명에서 3명이 5개 과정, 4명에서 6명이 5개 과정, 7명에서 9명이 3개 과정, 10명 이상이 3개 과정, 기타가 1개 과정이었다. 학위과정 중에서는 전임교수들이 일정 수의 학생들을 전담하며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인도하는 전담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었다. 전임교수들의 경력은 5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17개 학위과정 중 13개 과정(76%)을 차지했다. 전임교수 외에 외래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외래 교수의 경우에도 타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다.

&lt;표16&gt;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2)

조사내용		과정수 (%)	
설립년도	1995년~1999년	2개 과정 (11.76)	
	2000년~2005년	5개 과정 (29.41)	
	2006년~2010년	10개 과정 (58.82)	
운영기간	1년 이상~3년 이하	3개 과정 (17.65)	
	3년 초과~6년 이하	7개 과정 (41.18)	
	6년 초과~10년 이하	5개 과정 (29.41)	
	10년 초과	2개 과정 (11.76)	
목적	교원 양성	10개 과정 (58.82)	
	연구자 양성	2개 과정 (11.76)	
	교원과 연구자 양성	1개 과정 (5.88)	
	기타(언어 및 문화 교수, 한국어 교육)	4개 과정 (23.53)	
전체교육기간	대학	8학기	5개 과정 (29.41)
	대학원	4학기	7개 과정 (41.18)
		5학기	3개 과정 (17.65)
		6학기	1개 과정 (5.88)
		기타(학점 충족 시)	1개 과정 (5.88)
전임강사 수	1~3명	5개 과정 (29.41)	
	4~6명	5개 과정 (29.41)	
	7~9명	3개 과정 (17.65)	
	10명 이상	3개 과정 (17.65)	
	기타	1개 과정 (5.88)	
전임강사	경력	5년 이상	13개 과정 (76.47)
	학위수준	박사	10개 과정 (58.82)
		박사, 박사 수료	4개 과정 (23.53)
		기타	3개 과정 (17.65)
평가 및 관리	실시	17개 과정 (100.0)	

전임교수들의 학력 수준은 박사 이상이 10개 과정으로 제일 많았다. 그 외에는 박사 수료가 많았으며, 석사 졸업 학력자의 경우가 제일 적었다. 전임교수들의 전공은 국어국문학 또는 한국학(한국역사, 한국문학, 한국어학 등)과 관련 전공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분들이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할 때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 별도로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 평가 실시는 17개 학위과정 모두에서 실시되고 있어, 학위과정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었다.

## 나. 교육과정

10개 기관의 17개 학위과정을 방문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교과과정 및 교과목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방문조사를 실시한 학위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과목의 경우, 현재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 예시와 동일한 교과목명으로 수업을 개설한 경우가 약 20.62%(전체 611개 과목 중 126개 과목)였다. 각 영역별로는 1영역의 한국어학 영역 약 20.37%(전체 108개 과목 중 22개 과목),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약 26.87%(전체 67개 과목 중 18개 과목),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약 25.40%(전체 252개 과목 중 64개 과목), 4영역의 한국문화 영역 약 13.29%(전체 158개 과목 중 21개 과목), 그리고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 약 3.85%(전체 26개 과목 중 1개 과목)였다.

과목 예시와 유사한 과목명으로 개설된 과목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51.72%(전체 611개 과목 중 316개 과목)이고, 각 영역별로는 1영역의 한국어학 영역 약 52.78%(전체 108개 과목 중 57개 과목),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약 62.69%(전체 67개 과목 중 42개 과목),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약 66.67%(전체 252개 과목 중 168개 과목), 4영역의 한국문화 영역 약 20.25%(전체 158개 과목 중 32개 과목), 그리고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 약 65.38%(전체 26개 과목 중 17개 과목)이다. 그 외에 과목 예시에도, 유사한 과목명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의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교과목에 대한 조사 중에 발견한 특이 사항으로는 학부에서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비동일 전공자의 경우에 보충학점 및 추가학점이 더해지거나 선수과목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학부 전공이 석사 전공과 다를 경우 보충학점이나 추가학점을 듣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강의참관 및 실습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모두를 실시하는 과정은 2개 과정, 강의참관 및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은 5개 과정,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을 실시하는 과정 10개 과정으로, 지침에서 필수과목인 강의참관 과목은 모두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었다.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강의참관은 동 학교의 국제교육원, 한국어학당 등 학교부속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모의실습 또는 강의실습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교안을 짜고, 그것을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거나 교내 외국인을 일회적으로 모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습한 이후에는 지도교수의 평가와 동료 학생들과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재는 출판교재를 사용하는 기관이 6개 과정, 교과목을 담당하는 담당교수가 교육 자료를 선택하거나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3개 과정,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8개 과정이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그 과목을 담

당하는 교육 담당자가 제작한 책자 수준으로 만들어진 강의노트를 주로 사용하였고, 필요할 경우에는 출판교재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이와 같이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과목 예시와 동일한 교과목 비율은 약 20.62%이고, 유사한 과목까지 포함했을 시에도 51.72%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과목 예시를 따르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강의참관, 실습, 교재 등의 부분에서는 운영지침의 항목들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3)

조사 내용		과정수 (%)
교육실습	강의 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2개 과정 (11.76)
	강의참관, 모의수업	5개 과정 (29.41)
	강의참관, 강의실습	10개 과정 (58.82)
교재	출판교재	6개 과정 (35.29)
	강사의 선택 및 제작	3개 과정 (17.65)
	출판교재, 강사의 선택 및 제작	8개 과정 (47.06)

#### 다.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자동 취득제 및 교과목 지정에 대해서는, 찬성은 5개 과정, 반대는 3개 과정, 기타 의견은 9개 과정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교과목을 지정하면 학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여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문화부분의 교과목이 더 필요하다, 문화나 역사 관련 과목은 학위과정 운영기관에 일임하고 교육실습에서 실습시간, 방법, 기관 등에 대해 더 상세히 명기하면 좋겠다 등도 있었다. 또한, 교과목을 지정하는 것보다 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기관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학사 자격 부여에 관한 의견은 찬성 6개 과정, 반대 10개 과정, 기타 1개 과정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한국어교원이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 상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한국어교원이 되고 싶은 하는 희망자들에게 자격취득의 가능성은 최대한 개방되어야 하며, 자격취득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수급의 문제는 자격증의 급수나 교원의 우수성 등의 차이로 실력을 갖춘 자와 실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의견으

로는 전문대학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가르칠 전문가나 강사가 없는 현실에서 문제의 해결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한다면 어떤 요건에 준해야 하는가의 질문에는 3급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졸업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치러 합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문대학 내에서의 이수할 학점 정도는 현재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학점 수준은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 7개 과정, 기타 10개 과정으로 응답하였다. 찬성 의견으로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미 너무 많은 수의 기관이 있으니 이에 대해 수치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3급 이하의 낮은 등급으로 취득 가능하게 해야 한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자일 경우 학위과정 졸업자와는 달리 승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등이 있었다. 그 밖에 비학위과정의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운영기관의 강사 전공의 기준 강화, 운영되는 교과 내용의 기준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인증 절차가 행정적으로 간략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기타의견으로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희망자들의 졸업과 동시에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 구직 등에 어려움이 있다, 참관수업 및 실습에 대한 협조가 타 기관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 학부과정의 필수이수학점인 45학점을 그 이하로 줄이자는 의견과 오히려 45시간 이상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에도 현재 120시간인 필수이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어교원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한국어교원의 해외진출 방안,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인력양성 등의 문제에 대해 제안되었다. 또한 자격취득이나 경력에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 방문교사 등과 같은 자원봉사 경험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lt;표18&gt; 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4)

의견	과정수 (%)
교과목 지정 찬반	찬성 5개 과정 (29.41), 반대 3개 과정 (17.65), 기타 9개 과정 (52.94)
전문학사 자격 부여 관련	찬성 6개 과정 (35.29), 반대 10개 과정 (58.82), 기타 1개 과정 (5.88)
전문학사 자격 부여 시 방법	3급에 준하여 실시(졸업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3개 과정 (29.41)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찬성 7개 과정 (41.18), 반대 0개 과정 (0.0), 기타 10개 과정 (58.82)
기타	졸업시기와 자격증 발급 시기의 불일치로 구직활동의 어려움 참관수업 및 실습에 대한 협조를 위한 정책적 도움 절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에 대한 조정 교원 일자리 창출

## 제2절 비학위과정 운영실태

### 1. 시도별 비학위과정 운영실태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시기에 교과과정 심사를 신청한 107개의 기관 117개 비학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기관을 제외한 수치이다.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문화원, 사설기관 등이었으며, 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국제교류원 관련, 한국어학당 관련, 문화원 관련, 평생교육원 관련, 사설기관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국제교류원 관련이란 국제센터, 국제교류교육원 등을 포함하며, 한국어학당 관련은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등을 포함한다. 문화원 관련은 국어문화원, 한국어문화원, 한민족교육문화관 등을 포함하며, 평생교육원 관련은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대학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학부설이 아닌 사설기관으로 인력개발센터 등이 포함된다. 그 외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도 있었다.

각 기관의 유형별 개수는, 학교부설의 국제교류원 관련은 9개 과정, 한국어학당 관련은 총 42개 과정, 문화원 관련은 9개 과정, 평생교육원 관련은 총 31개 과정, 그 외 사설기관 및 기타 등에 속하는 과정이 총 26개 과정으로 총 117개 과정이다.<sup>23)</sup> 지역별로는 강원 5개 과정, 경기 9개 과정, 경남 5개 과정, 경북 4개 과정, 광주광역시 4개 과정, 대구 2개 과정, 대전 7개 과정, 부산 11개 과정, 서울 41개 과정, 울산광역시 2개 과정, 인천 2개 과정, 전남 2개 과정, 전북 8개 과정, 충남 9개 과정, 충북 6개 과정이 있었으며, 지역비율로는 서울(35.04%), 부산(9.40%), 경기(7.69%), 전북(6.84%), 대전(5.98%), 충남(5.13%), 충북(5.13%), 강원(4.27%), 경남(4.27%), 경북(3.42%), 광주(3.42%), 대구(1.71%), 울산(1.71%), 인천(1.71%), 전남(1.71%) 순이었다.

23) 동일 기관에서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에도 기관 한 개로 세어 107개 기관이며 과정은 총 117개임. [부록 2] 참조

&lt;표19&gt; 전국 시도별 비학위과정 개수

구분	강원	경기	경북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과정수 (개)	5	10	4	5	4	2	7	11	40	2	2	2	8	9	6
비율 (%)	4.27	7.69	3.42	4.27	3.42	1.71	5.98	9.40	35.04	1.71	1.71	1.71	6.84	5.13	5.13

\* 세종학당 통합교육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재구성

## 2. 방문조사 결과

### 1) 조사방법

비학위과정 방문조사도 온라인·오프라인, 대학부설·사설기관, 기관 특성별(국제교류원 관련·한국어학당 관련·문화원 관련·평생교육원 관련), 지역별 중복자제 등의 기준으로 10개 기관 12개 비학위과정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각 구분에 따라 편중되지 않는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 기관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공동운영하는 기관도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방문조사를 실시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10개 기관의 12개 비학위과정이었다. 2010년의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 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기관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 강사진, 기관운영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다. 조사방식은 질문지<sup>24)</sup>를 미리 해당 기관에 송부한 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또는 담당교수를 만나 질문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 방식이었다. 질문문항은 2010년에 제작된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의 ‘단기양성기관의 운영지침’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질문 문항 중에 전임교수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는 2010년 제시된 지침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어교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위과정에서와 동일하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현 교과과정 심사 방식, 교과목 지정,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24) [부록 3]참조

실시, 전문학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요건에 대해 질문하였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인증제 실시에 해당하는 기관이므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항목들을 질문하였다.

<표20> 비학위과정 조사 현황

번호	구분 1		구분 2		구분 3				지역	과정수
	온라인	오프라인	대학부설	사설	국제교류원 관련	한국어 학당 관련	문화원 관련	평생교육원 관련		
1	x	○	○	x	○	x	x	x	경남	1
2	○	x	○	x	x	○	x	x	서울	2
3	x	○	○	x	x	x	○	○	충북	2
4	x	○	○	x	x	x	○	x	전북	1
5	x	○	○	x	x	x	x	○	충남	1
6	x	○	○	x	x	○	x	x	경남	1
7	x	○	x	○	-	-	-	-	부산	1
8	x	○	x	○	-	-	-	-	서울	1
9	x	○	x	○	-	-	-	-	서울	1
10	x	○	x	○	-	-	-	-	서울	1

\* -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표21>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기관 개요	설립년도 및 총 운영기간, 운영 목적
교육 기간	일 년 내 교육 횟수, 총 기간, 교육시간(주간/야간)
교육 과정	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준,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 교재명 및 교재선택 기준
학생	학생 수 현황, 입학생 학력 및 수 추이, 졸업 현황 및 졸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강사	전임강사 수, 교수진 구성, 전공 및 학위수준, 경력
시설	강의실 수 및 강의실 크기, 강의기자재, 행정직원 및 행정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관리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학사 및 출결 관리), 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현 교과과정 심사 방식의 개선, 교과목 지정, 전문학사 요건 도입,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등 관련

## 2) 조사결과

### 가. 기관 개요

비학위과정의 조사대상 10개 기관의 총 12개 과정에 대해 설립년도와 운영 목적을 조사한 결과, 설립년도는 2006년도 이전이 1개 과정, 2006년도 이후에 생긴 과정이 11개 과정이었다. 즉 비학위과정 역시 2005년 7월 이후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많은 과정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1)

구분	설립 년도	운영목적	전체 교육 시간	1일 교육 시간	교과목	교재	교육실습				평가	학생 수	전임강사		행정 직원	교육 시설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참관 일지			수	전공		
1	2003	봉사	120	7-8	시행령 준수	자체 제작	실시	실시	-	-	실시	감소	1	미술 교육	1	적절
2	① 2006	한국어교사 양성	120	4	시행령 준수	출판 교재	실시	-	실시	작성	실시	유지	-	-	6	적절
	② 2008	단체요청	128	-	시행령 준수	자체 제작	-	-	실시	작성	실시	유지	-	-	7	적절
3	2007	한국어 인재 양성	127	3-6	시행령 준수	자체 제작	실시	실시	실시	-	실시	감소	20	국어 국문	존재	적절
4	2009	의뢰로 시작	128	3	강사 의존	출판교 재	실시	실시	-	작성	-	증가	-	-	1	적절
5	2010	선교도구	120	8	시행령 준수	출판 교재	실시	-	실시		안함	유지	-	-	1	부적절
6	2007	교원양성	120	6	시행령 준수	자체 제작	실시	-	실시	-	실시	증가	-	-	2	적절
7	2007	해외 취업	400	6	시행령 준수	출판 교재	실시	-	실시	작성	실시	유지	1	국문	12	적절
8	2008	전문 인력 양성	120	6	시행령 준수	자체 제작	실시	실시	실시	작성	실시	증가	1	한국어 교육	3	적절
9	① 2008	자격증	120	온라인	시행령 준수	자체 제작	실시	지도안	실시	작성	실시	유지	4	-	2	적절
	② 2009	봉사, 관심					동영상								-	-
10	2009	한국어교사 양성	120	-	시행령 준수	출판 교재	실시	실시	-	작성	실시	증가	2	국문	존재	적절

\* '-' 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의미함

운영목적으로는 한국어교육 인력 양성이 4개 과정, 교원 양성이 2개 과정, 봉사 및 선교 인력 배출이 3개 과정, 해외취업 목적이 1개 과정, 외부 기관에서 의뢰하여 운영 등이 2개 과정이 있었다. 이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비해 그 운영 목적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학위과정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한국어교원 자

격 취득 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대한 목적보다는 봉사, 선교 등 수강생의 개인적 이유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목적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하고 각 과정의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하게 학위과정에 비해 짧은 교육시간 등을 이유로 비학위과정 운영 자체를 비판하기 보다는, 비학위과정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그에 부합되도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23>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2)

조사내용		과정수 (%)
설립년도	2006년도 이전	1 (8.33)
	2006년도 이후	11 (91.67)
목적	교육인력양성	4 (33.0)
	교원 양성	2 (17.0)
	봉사/선교	3 (25.0)
	취업	1 (8.0)
	기타(단체의 요청, 개인 관심, 의뢰)	2 (17.0)
전체 교육기간	120시간~130시간	11 (92.0)
	130시간 이상	1 (8.0)
1일 교육시간	4시간 이하	2 (17.0)
	4시간 초과~6시간 이하	4 (33.0)
	6시간 초과	2 (17.0)
	기타(온라인)	2 (17.0)
교과목	시행령 준수	11 (92.0)
	기타(강사의존)	1 (8.0)
교육실습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 실시	4 (33.0)
	강의참관, 모의수업	3 (25.0)
	강의참관, 강의실습	4 (33.0)
	강의실습	1 (8.0)
교재	출판교재	5 (42.0)
	자체제작	7 (58.0)
	전임강사 임용	7 (58.0)
	평가 실시	10 (83.0)
	행정직원 임용	11 (92.0)

## 나. 교육과정

10개 기관의 총 12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교육기간, 1일 교육시간, 교과목, 교육실습, 교재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전체 교육기간은 120시간 이상 130이하가 11개 과정으로 대부분이었으며, 130시간 이상 하는 과정도 1개 과정이 있었다. 1일 교육시간으로는 4시간 이하 2개 과정, 하루 4시간 초과 6시간 이하 4개 과정, 6시간 초과 2개 과정, 온라인을 포함한 기타의 경우가 2개 과정이 포함되었다. 2010년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에 따르면 1일 교육시간으로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조사대상 비학위과정은 4시간 이하 2개 과정(17%), 6시간 이하 6개 과정(50%)의 정도로 1일 교육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과목 개설은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준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11개 과정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위과정에 비해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과목 예시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의참관 및 실습에 대한 부분은 거의 모든 방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강의참관, 모의실습, 강의실습 모두를 진행하는 과정은 4개 과정, 강의참관과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3개 과정, 강의참관 및 강의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는 4개 과정, 강의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는 1개 과정으로, 1개 과정을 제외하고는 필수과목인 강의참관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부설 기관의 경우에는 강의참관이 학교 내 한국어학당이나 한국어 교육반을 참관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사설에서 운영하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주변 대학의 사회교육원, 국제문화교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기관 간 협력이 어려울 때는 모의 실습을 통해 서로 간의 수업을 보고 평가해주는 것으로 참관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타 기관의 한국어수업을 녹화해 와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관일지를 쓰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 대부분의 과정에서 참관일지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참관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어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참관일지 내용이 부족하거나 학생들이 작성한 참관일지를 교사가 수거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 참관일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었다.

모의 실습이나 강의실습도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을 수업시간에 불러서 외국인 앞에서 동료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는 형식 또는 같은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 앞에서 실습하는 방식이 있었다. 실습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관도 있었다. 참관 및 강의실습 등과 같은 교육실습을 실시하기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기관 간 협력, 협력기간과의 시간 조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교재의 경우, 출판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5개 과정,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7개 과정이었다. 방문한 3개 과정에서는 한 권으로 된 교재를 관련 자료로 제공하였는데, 각 과목을 진행하는 담당강사가 수업을 위해 자체 제작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형태였다. 또한, 강사들의 강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어 관련 자료로 제출한 과정은 2개 과정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교재와 관련하여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강사에게 수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강사가 수업 내용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학위과정의 운영기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 1일 교육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참관 수업 이후 참관 일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재 부분에서 학위과정보다 훨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인증제 기준을 마련할 시 1일 교육시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항목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제 기준으로 참관수업을 포함하여 참관일지에 포함될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도 인식하였다. 또한 사용하는 교재나 강의진행방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이나 설명도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 다. 학생

조사대상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수강 학생수는 대부분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수준이었으며, 한 과정에 30명이 넘는 경우는 없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률은 알 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자격 취득률을 알기 어려웠던 이유는 운영기관이 등록한 학생들의 이수 후 진로 등에 대해 안내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학위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과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기관에서는 이수자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결국 비학위과정을 이수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3급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이 과정을 통해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일부 과정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그리고 일부 비학위과정(특히 사설기관의 경우)에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과는 별도로 학생들이 외국 유학이나 선교의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어교육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학생들도 비학위과정을 이수한 이후 검정시험에 통과하여 3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기관이 졸업생들의 취득률을 알기는 어려웠다. 비공식적으로 응답한 자격증 취득률의 현황은 1%미만 1개 기관,

3~4%라고 응답한 과정이 2개 과정, 20%라고 응답한 과정이 1개 과정 정도였다. 비학위 과정 운영기관의 입장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과정을 이수하고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의견이었으며,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대비 과정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비학위과정 이수자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문제는 기관의 문제가 아닌 순전히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비학위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출석에 대해 매해 출석부나 온라인 시스템, 지문시스템 등을 통해 출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은 학위과정처럼 중간, 기말 등의 지필고사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시험을 보는 곳도 있었고, 반면에 과정이 마칠 때쯤 1회 시험으로 성적을 환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위과정보다는 성적을 환산하는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증제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적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라. 강사

현재 비학위과정의 운영지침에서 전임강사의 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학위과정에서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전임교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비학위과정의 경우 전임교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단지 영역별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강사진을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3영역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10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조사대상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전임강사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총 12개 과정 중 5개 과정이었다. 이 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은 단 1명이었으며, 그 외에 국문과 전공자가 4개 과정으로 제일 많았다. 미술교육 등 한국어교육과는 관계 없는 계열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엔 수업을 담당하지는 않고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총 강사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3개의 과정 뿐이며, 3명 이하의 경우도 3개 과정이나 되었다. 특히 비학위기관 운영지침에서 강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관도 많았다. 강사의 학력은 박사수료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이상자였으며, 조사한 기관 전체 가운데 석사 학위의 강사는 단 2명 뿐이었다. 또한 강사의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2개 과정, 최소 3년 이상 2개 과정, 최소 5년 이상 1개 과정이었다.

결국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에 근거한 강사의 자격요건에서 학력 기준은 대부분 충족하고 있지만, 경력 부분에서는 미흡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 마. 시설 및 내부 평가

기관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행정직원 여부, 교육시설, 프로그램 평가 여부 등을 살펴보면, 과정을 전체 담당하는 행정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는 기관이 11개 과정으로 거의 모든 기관이 담당 행정직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행정직원의 역할이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학위과정을 위한 강의실은 주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실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학생 수에 맞추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부설의 경우에는 자체 기관 내 교실을 사용하였고 사설의 경우에는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 내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실 내에는 프로젝트, 컴퓨터, 마이크, 칠판 등 기본적인 기자재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평가는 12개의 과정 중 10개 과정에서 실시 중이었다. 하지만 내부 평가가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내부 평가 결과가 실제 교육과정과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학부설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보다 사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경우 내부프로그램의 실시하는 비율이 낮았다.

시설 및 내부 평가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시설 부분에서는 2010년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잘 구비하고 있었으며,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타 과정도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 등의 부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해야 함은 물론, 평가 결과가 과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바.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지정에 대한 의견은 7개 과정에서 찬성하였으며, 반대한 과정은 1개 과정, 그리고 기타 의견은 4개 과정이 있었다. 기타 의견에는 현행 과목 예시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 교과목지정 보다는 과목과 그 시수를 조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포함된다. 교과목과 관련해서 4영역인 한국문화 영역의 시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한국어사 등의 일부 과목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밖에 현 교과과정 심사제도에 관한 의견 중 교과목 심사 시기를 알기 어려우니 각 기관별로 메일 등으로 공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또한 자격증 발급 방식에 대해 시험합격과 동시에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고, 합격 이후에 개인별로 심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의견, 그리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격증에 무시험검정이라고 표기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서 찬성 8개 과정, 반대 1개 과정, 기타 3개 과정이 있었다. 찬성 이유로는 대부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많은 기관이 개설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몇 개 학교나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들었으며,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에 대한 염려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운영 매뉴얼을 주거나 재정 지원이 더욱 시급함을 강조하는 기관도 있었다.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요건과 관련해서 5개 과정에서 찬성하였으며, 4개 과정에서 반대하고, 그 외의 의견으로 3개 과정이 있었다. 그 외의 의견에는 학력에 대한 요건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과 더 시급한 것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자격 부여 요건이 도입된다면 3급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개 과정이었으며, 전문학사제도를 도입한다면 현행 부전공의 기준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1개 과정이 있었다. 또한 학부와 같은 학점을 이수한다면 동일한 급수의 자격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24> 비학위과정 방문조사 결과(3)

의견	과정수 (%)
교과목 지정 찬반	찬성 7개과정(58.33), 반대 1개과정(8.33), 기타 4개과정(33.33)
전문학사 자격 부여 실시	찬성 5개과정(41.67), 반대 4개과정(33.33), 기타 3개과정(25.00)
전문학사 자격 부여 시 방법	부전공 준하여 실시 : 1개과정(8.33) 3급에 준하여 실시 (졸업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2개과정(16.67)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찬성 8개과정(66.67), 반대 1개과정(8.33), 기타 3개 기관(25.00)
기타	한국어사 등 일부 과목 폐지 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관 심사 일지 공지, 졸업시기와 자격증 심사 실시 기간 일치

## 제3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 조사 방법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위과정에서 교원양성을 하는 교수, 강사 등 교육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학위과정의 기관 심사 신청을 한 담당자 및 본 연구의 방문조사에 응해준 담당교수 총 109명의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중 25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23%이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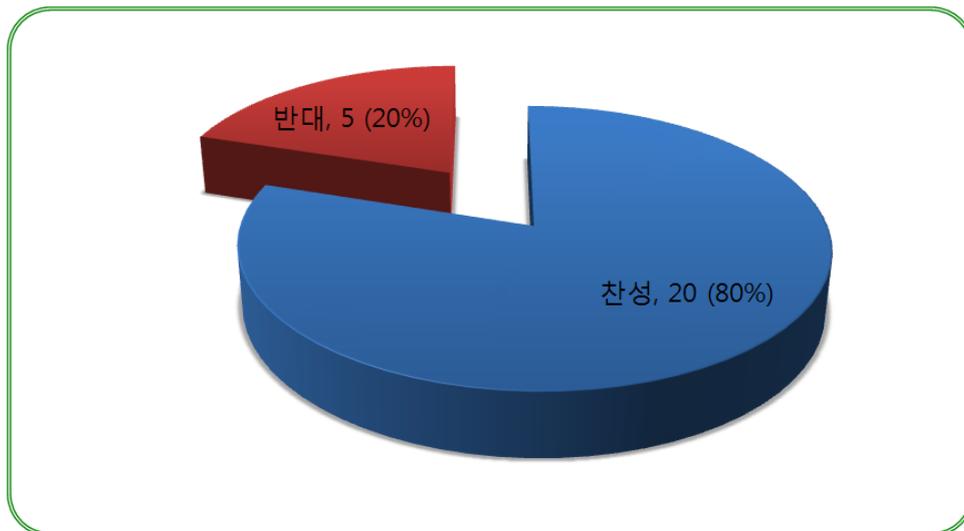
<표25> 한국어교원 교육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설문 내용
1.1	학위과정에서 자격증 자동 취득을 위한 교과목 지정	교과목을 지정하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에 대한 찬반
1.2		현재 법령 과목 예시를 지정과목으로 추진
1.3		현재 법령 과목 예시 중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과목
1.4		각 영역별 인정과목의 허용정도
2.1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에 대한 찬반
2.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범위
2.3		인증제 이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관리방안
2.4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도입 시 인증기준
3.1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찬반
3.2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방식

## 2. 조사 결과

### 1) 자격증 자동 취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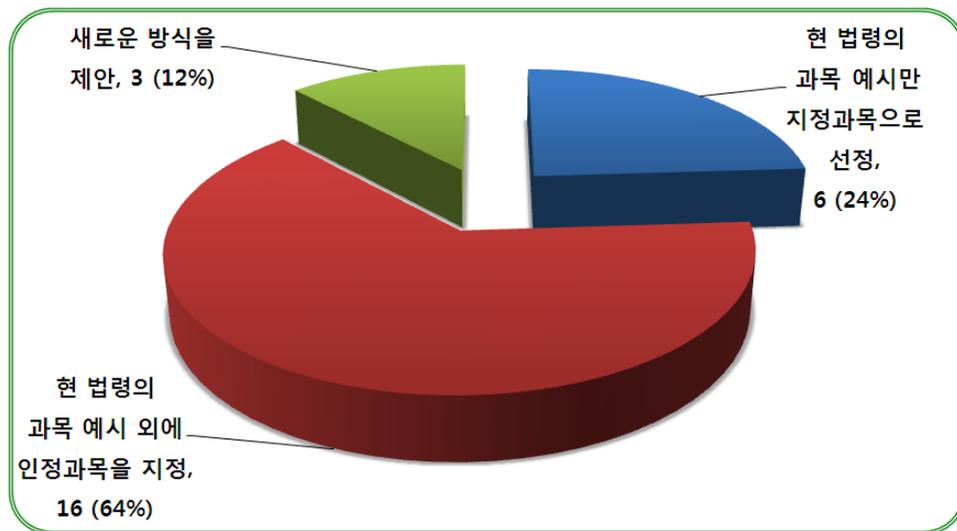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매회 자격취득 심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영역마다 개설된 과목명이 다르고, 어떤 영역의 경우 개설된 과목이 아예 없는 과정도 있어 필수이수학점의 승인여부에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이에 필수이수학점 취득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 교과목을 이수한 학위과정 졸업자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안을 마련하고 이것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지정과목 실시에 대해서 찬성 20명(80%), 반대 5명(20%)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찬성했다.



<그림 3> 자격증 자동취득을 위한 지정과목 실시에 대한 의견

또한, 지정과목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과목이 지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질문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에 예시되어 있는 5개 영역의 과목 그대로 지정과목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질문지에서 ‘현 법령의 과목 예시만을 지정과목으로 선정한다’, ‘현 법령의 과목 예시 외에 인정과목을 둔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세 가지 답변에 관한 항목을 마련하였다. 응답결과 ‘현 법령의 과목 예시 외에 인정과목을 둔다’는 의견이 16명 (64%)으로 가장 많았다.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일정한 수준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이 좋겠다', '사회 변화나 필요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림 4> 지정과목 실시에 대한 의견

현재 법령 과목 예시 중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과목이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26>과 같다. 1영역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할 과목에 대해서는 '한국어통사론'이 빈도수 2로 높은 편이었으며 삭제되어야 할 과목으로는 '한국어사'가 빈도 2로 높았다. 2영역의 경우에는 '응용언어학'이 삭제되어야 할 항목으로 빈도 3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영역의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번역론'역시 빈도수 3 이상으로 삭제되어야 할 과목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영역의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개론',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화비평'이 빈도수 3이상으로 삭제되어야 할 과목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의견에 1영역의 국어학개론을 한국어학개론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3영역의 언어교수이론을 한국어교수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한국문화교육론을 3영역이 아닌 4영역으로 이동하자는 의견, 5영역에 교육실습기간을 명기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lt;표26&gt; 과목 예시의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영역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추가	빈도	삭제	빈도	기타
1. 한국어학	국어연구의 기초	1	한국어사	2	-국어학개론을 한국어학개론으로 명명
	한국어통사론	2	국어학개론	1	
	한국어 음성·음운론	1	한국어화용론	1	
	한국어 형태론	1			
	한국어의미론	1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국어와 인지정보	1	응용언어학	3	
	담화와 텍스트	1	대조언어학	1	
	한국어 중간언어연구	1	사회언어학	1	
	한국어오류분석론	1	심리언어학	1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오류분석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1	한국어한자교육론	5	-언어교수이론은 한국어교수법으로 변경 -한국문화교육론은 4영역으로 이동
	한국어교육세미나	1	한국어번역론	3	
	한국어교수법	1	교육정책론	1	
	한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1	교재론	1	
	한국어교육 연구방법론	1	언어교수이론	1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론(고전, 현대)	1			
4.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연구 방법론	1			
	한국문학관련 강의	1	전통문화현장실습	6	
	한국시의이해	1	한국민속학	2	
	한국사의 이해	1	한국문학개론	3	
	구비문학론	1	한국문학의 이해	4	
	한국문학사	1	한국현대문화비평	3	
	한국학일반론	1			
	한국의 역사	1			
	한국언어문화연구	1			
	한국언어문화	1			
	언어와 문화	1			
	다문화 가정의 이해	1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법	1			
	한국문화론	1			
	한국문화교육론	1			
	타문화의 이해	1			
	지역문화연구	1			
비교문화론	1				
세계 속의 한국문화	1				
5. 한국어교육 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실습	1	강의참관	1	-교육실습기간 명기
	해외 한국어교사 인턴십	1	강의실습	1	
	국내 한국어교사 인턴십	1	모의수업	1	
	강의안 및 교구 제작 관련 수업	1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수업	1			
	한국어교육기관인턴십	1			
	한국어교육실습	1			
	한국어 강의 참관과 실습	1			
해외 강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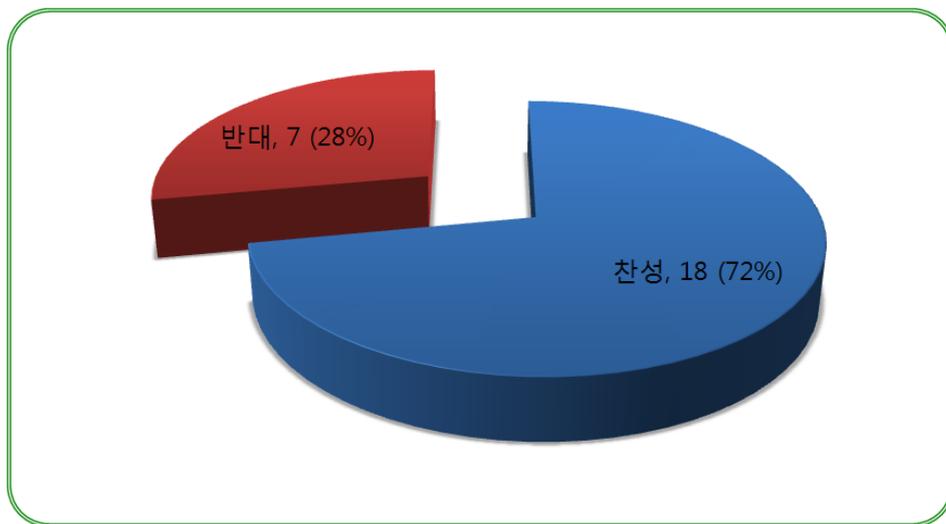
한편, 지정과목 외에 인정과목을 두었을 때 어떠한 과목이 인정과목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어원에 기관심사 신청을 한 64개 기관 86개 학위과정의 다양한 과목 중 현재 법령에 과목 예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추려 그 빈도수가 2이상인 과목을 각 과목 예시의 인정과목으로 제시하고 각 과목들이 인정과목으로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매우허용가능’, ‘허용가능’, ‘보통’, ‘허용불가능’, ‘매우허용불가능’, 다섯 가지의 척도를 제시하여 의견을 물었다. 설문 결과 ‘매우허용가능’ 및 ‘허용가능’이라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온 과목들은 <표27>과 같다.

<표27> 과목 예시에 따른 인정과목 제시의견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학일반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음성·음운론, 한국어 음운론 연구
	한국어문법론	한국어문법의 이해, 한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어휘·형태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 의미론 연구,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연구
	한국어사	-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교사를 위한 어문규범, 한국어맞춤법과 표준어규정, 한국어 규범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일반론
	언어학개론	언어학일반론, 언어학의 이해
	대조언어학	대조언어학이론과실제
	외국어습득론	언어습득연구, 한국어습득연구, 제2언어학습이론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학연구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설계
	한국어평가론	한국어능력평가론, 한국어교육평가
	언어교수이론	한국어교수법, 외국어교수법,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수 방법론,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어교수학습론
	한국어표현교육법 (말하기, 쓰기)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법 (듣기, 읽기)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한국어 문법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연구
	한국어교재론	한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교재구성 및 개발연구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전통문화교육론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 민속의 이해, 한국인의삶과민속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화의이해, 한국현대문화론연구
	한국의 전통문화	-
	전통문화현장실습	-
	현대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
5. 한국어교육실습	강의 참관	한국어 강의 참관, 한국어 강의 실습,
	강의 실습	한국어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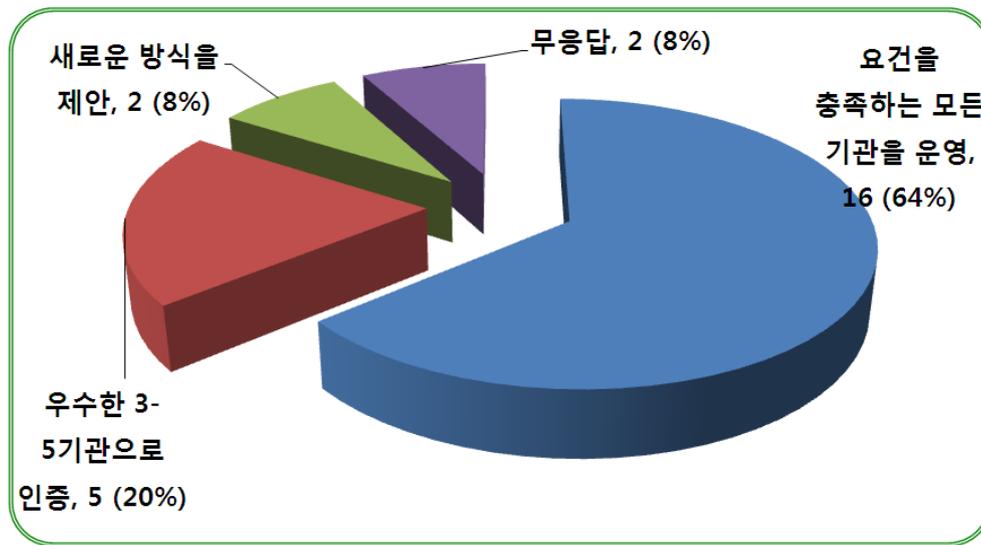
## 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한국어교원양성을 위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기관들에 대한 규정 및 규제가 없어서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받은 양성과정 이수자에게만 3급 교원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응답 결과 한국어교원양성을 위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 18명(72%), 반대 7명(28%)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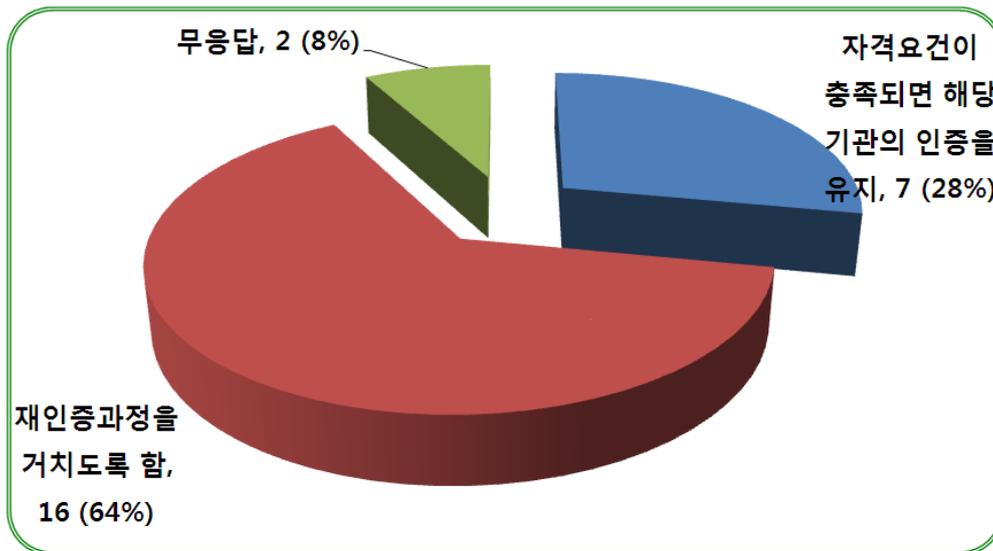


<그림 5>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약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그 운영기관의 인증 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운영하도록 함’, ‘우수한 3~5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하도록 함’,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주어 의견을 받았는데, 응답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16명(64%)로 가장 많았다.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된 의견으로는, 인증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되 지역별로 적절히(인구를 고려하여) 안배를 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어교육관련 학과가 있는 기관만 교원양성기관이 될 수 있다, 타 기관에서 강사를 모셔 운영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강사 등의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의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충족 시 설치 인가해야 한다 등이었다.



<그림 6>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범위에 대한 의견



<그림 7>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한 번 인증한 기관에 대해 자격요건이 계속 충족되면 해당 기관의 인증을 유지함’, ‘기관평가를 통한 재인증(2년 또는 3년에 1번) 과정을 거치도록 함’, ‘새로운 방안을 제시’의 세 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를 통한 재인증(2년 또는 3년에 1번)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64%)으로 가장 많았다.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기타의견으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그리고 교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는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3개 영역의 10가지 세부사항으로 질문하였는데, 이때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은 2010년 ‘단기양성기관 운영지침’에 근거한다. 응답결과,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이 인증기준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21명(87%)으로 가장 높았고, ‘교수 또는 강사진’, ‘교육내용’ 및 ‘실습과목 평가여부’가 각 18명(75%)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원자격증 시험에 통과한 이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내용에 이수자가 한국어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 기관에 속한 강사 확보율 등을 포함하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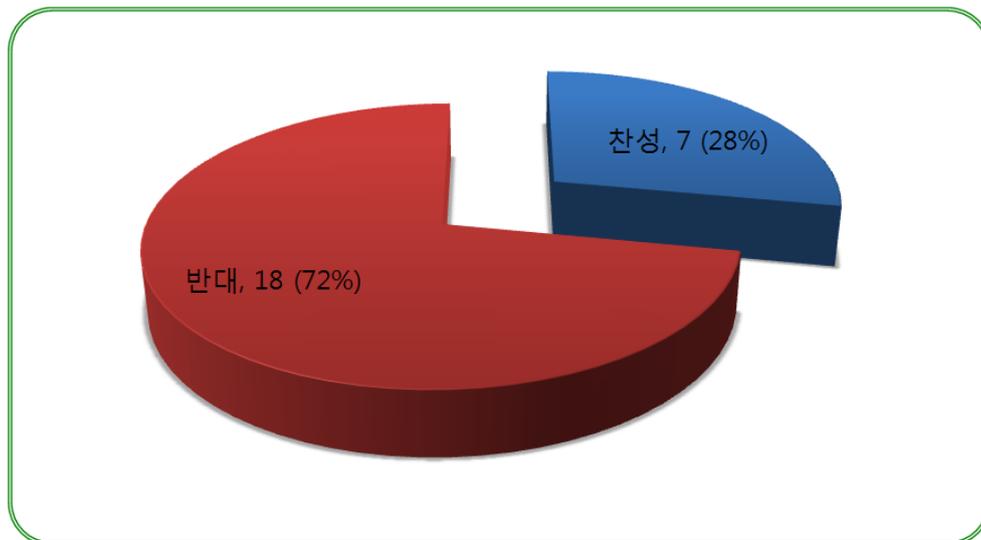
<표28>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의 필요성 인식

영역	세부사항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매우 필요 없음
기본요건	1.교수 또는 강사진	18 75%	6 25%	0 0%	0 0%	0 0%
	2.기본 시설 및 설비	11 46%	9 38%	3 12%	1 4%	0 0%
운영여건	3.시설 활용	8 33%	10 42%	6 25%	0 0%	0 0%
	4.내부 프로그램 평가 여부	11 46%	12 50%	1 4%	0 0%	0 0%
	5.행정 및 재정	9 38%	12 50%	3 12%	0 0%	0 0%
학습과목	6.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21 87%	3 13%	0 0%	0 0%	0 0%
	7.교육내용	18 75%	6 25%	0 0%	0 0%	0 0%
	8.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18 75%	4 17%	2 8%	0 0%	0 0%
	9.교재	8 33%	9 38%	7 29%	0 0%	0 0%
	10.학습관리	13 54%	9 38%	2 8%	0 0%	0 0%

\* 결측지로 인해 전체 25명 중 24명의 응답결과만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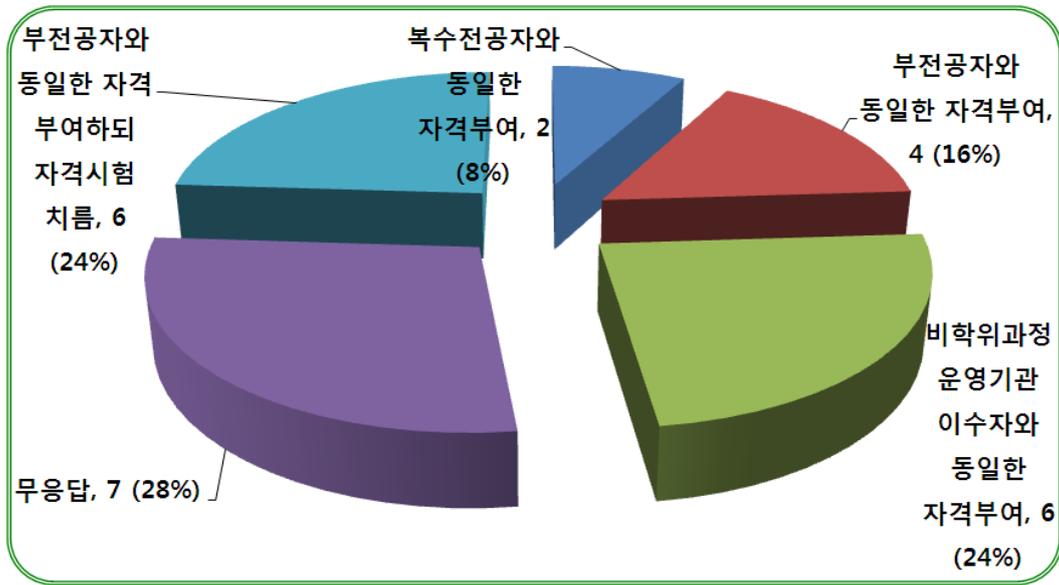
### 3) 전문학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자, 또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의 자격취득 조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력규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력별로 보다 공평하고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자격에 전문학사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대해 찬성 7명(28%), 반대 18명(72%)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8>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의견

또한, 전문학사에게 한국어교원자격을 부여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복수전공자와 동일한 자격부여’, ‘부전공자와 동일한 자격부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양성과정 이수자와 동일한 자격부여’, ‘부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함’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의견이 각 6명(24%)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중등 정교사의 기본 요건은 사범대학 등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원 자격 역시 엄격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범람과 비적격 교원의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9>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방식에 대한 의견

#### 4) 요약

한국어교원 자격과 관련한 전문가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과정에서의 자격증 자동 취득을 위한 교과목 지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위해 교과목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 법령 과목 예시 외에 인정과목을 두자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추가되어야 교과목으로는 1영역 한 영역에서만 한국어통사론이 타 교과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삭제되어야 할 과목으로는 1영역의 한국어사, 2영역의 응용언어학, 3영역에서는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번역론, 4영역에서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개론,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화비평 등 타 영역에 비해 많은 과목수가 삭제되어야 할 과목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1영역의 국어학개론을 한국어학개론으로 변경하자는 의견, 한국문화교육론을 4영역으로 이동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전문가 집단에서는 현재 과목 예시에서 첨가할 과목보다는 삭제해야 할 과목이 더 많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특히 4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 예시에 대한 변경에의 요구가 높으며, 국어학과 한국어학을 구별하여 그 교과목을 명명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운영 기관의 인증 범위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며, 인증제 실시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2년

또는 3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2010년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마련한 10가지 항목의 인증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설 활용 항목과 교재 항목을 제외한 교수 또는 강사진, 기본 시설 및 설비, 내부 프로그램 평가 여부, 행정 및 재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등의 8개의 항목에서 8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다. 시설 활용과 교재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10가지 항목 모두를 인증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적합해 보인다.

셋째, 전문대학 졸업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꼭 부여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졸업자에 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부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두 가지 의견은 결국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즉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에의 조건을 더하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 제4장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

제1절. 학위과정의 교과목 지정 및 자동취득 방안

제2절.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방안

제3절. 전문학사 자격요건 도입방안



# 제1절 학위과정의 교과목 지정 및 자동취득 방안

## 1. 교과목 지정 안

국내 유사자격제도와와의 비교, 방문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과목을 지정하려는 제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며, 한국어교원 양성 현장 및 교육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법령의 과목 예시를 지정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과목 예시를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정과목으로의 추가 및 삭제해야 할 과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1영역의 ‘국어학개론’을 ‘한국어학개론’으로 변경하고, 한국어사를 삭제하였으며, 3영역에서의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번역론’을, 4영역의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문학개론’,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화비평’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근거하여 정리한 지정과목의 제안(1차안)은 <표29>과 같다.

<표29> 지정과목 제안(1차안)

영역	지정과목안
1.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어문규범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현대한국사회,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lt;표30&gt; 인정과목 제안(1차안)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안)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학일반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음성·음운론, 한국어 음운론 연구
	한국어문법론	한국어문법의 이해, 한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어휘·형태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 의미론 연구,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연구
	한국어사	-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교사를 위한 어문규범, 한국어맞춤법과 표준어규정, 한국어 규범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일반론
	언어학개론	언어학일반론, 언어학의 이해
	대조언어학	대조언어학이론과실제
	외국어습득론	언어습득연구, 한국어습득연구, 제2언어학습이론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학연구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설계
	한국어평가론	한국어능력평가론, 한국어교육평가
	언어교수이론	한국어교수법, 외국어교수법,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 수방법론,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어교수학습론
	한국어표현교육법 (말하기, 쓰기)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법 (듣기, 읽기)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한국어 문법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연구
	한국어교재론	한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교재구성 및 개발연구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전통문화교육론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 민속의 이해, 한국인의삶과민속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화의이해, 한국현대문화론연구
	한국의 전통문화	-
	전통문화현장실습	-
	현대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한국어 강의 참관, 한국어 강의 실습, 한국어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강의 실습	

또한, 지정과목으로 제안된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정과목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인정과목을 제안하는 첫 번째 절차는 학위과정에서 운영 중인 교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한다. 즉 현행 시행령에서 제시된 과목 예시와 유사한 과목으로 인정되면서 그 유사과목이 2개 이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과목이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타 과목이지만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과목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절차는 이러한 인정과목의 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매우허용가능’ 및 ‘허용가능’이라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온 과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제안된 인정과목의 목록은 <표30>과 같다.

이와 같이 제안된 지정과목과 인정과목을 중심으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된 목록은 <표31>과 같다. 1차 안과 최종안을 비교하였을 때, 지정과목의 경우 1영역과 2영역은 변동이 없다. 3영역의 경우, 한국어교육개론이 한국어교육학개론으로, 한국어교수방법론이 언어교수이론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과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은 각각 한 과목씩 한국어말하기교육법, 한국어쓰기교육법, 한국어듣기교육법, 한국어읽기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요즘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을 감안하여 한국어교육공학론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4영역의 경우 한국문화론, 한국문학론, 한국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등 4개의 과목으로 새롭게 지정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 4영역의 과목 예시에 대한 수정 의견이 높았고, 1차 안에서 정해진 4개의 과목이 문화의 영역을 고루 가르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서였다.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와 한국어교원의 교육대상 등을 감안하여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를 추가하였다. 5영역의 경우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1, 2로 새로이 지정하였는데, 이는 강의참관, 모의수업, 강의실습이 각각 따로 진행될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과목인 강의참관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서였다.

&lt;표31&gt; 지정과목과 인정과목 제안(최종안)

영역	지정과목(안)	인정과목(안)
1.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사
	한국어음운론	한국어음성·음운론, 한국어음성학
	한국어문법론	한국어통사론, 한국어형태론, 한국어형태·통사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어휘·형태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의미·화용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담화론, 한국어담화·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2. 언어학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
	대조언어학	-
	사회언어학	-
	심리언어학	-
	외국어습득론	제2언어습득론, 제2언어학습이론
3.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개론	한국어교사론, 한국어학습자론
	한국어교육과정론	-
	한국어평가론	-
	한국어교수방법론	-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
	한국어문법교육론	-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학습사전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재 및 교구론
	한국문화교육론	-
	한국어교육공학론	한국어매체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	
4. 한국문화	한국문화론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론	한국의 현대문학, 한국의 고전문학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역사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1	-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2	-

\* 과목명에 "외국어로서의~, ~연구, ~탐구, ~연습, ~이해"가 포함된 경우도 인정됨.

\*\* 지정과목에 따른 인정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또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음

제안과정에서 인정과목의 경우 1차 안과 비교하였을 때 많은 수정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는 인정과목의 경우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지정과목을 통한 자동취득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영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 3, 4, 5 영역에서 인정과목의 수를 많이 줄였다. 그러나, 한 개 기관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운영하여 심화과정이 있을 경우 또는 한 기관에서 여러 개의 과정을 운영할 경우 등에 따라 정책적 융통성과 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과목마다 지정과목 명에 "외국어로서의~, ~연구, ~탐구, ~연습, ~이해"가 포함된 경우를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삭제된 인정과목 1차안의 과목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영역의 명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각 영역별 수위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을 언어학으로 수정하고,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은 한국어교육학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1영역 한국어학, 2영역 언어학, 3영역 한국어교육학, 4영역 한국문화,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으로 영역별 명칭을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단기양성과정이나 단기양성기관 등으로 불리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칭한다. 그동안 양성과정, 단기양성과정, 단기양성기관 등으로 명칭이 통용되어 사용되며, 이것의 의미 또한 그 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즉 단기양성과정이라 불리는 비학위과정이 실제로 1년 이상 진행되어 실제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통해 과목의 균형성,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별도로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위의 결과에 따라 개정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 대한 개정안의 영역별 명칭, 지정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을 종합하면 <표32>와 같다.

〈표3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개정안

영역	지정과목(개정안)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	
1.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6학점	3학점		12시간
3.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공학론, 한국어교육정책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문화론, 한국문학론, 한국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1,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2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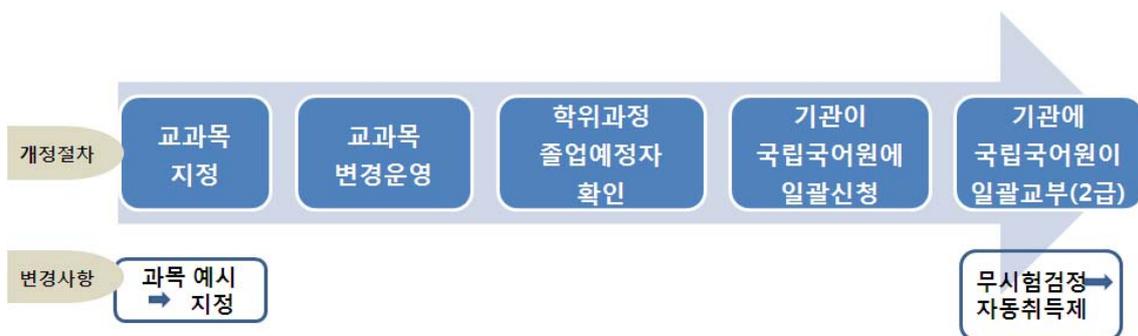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2. 교과목 지정에 따른 자동취득제 절차

지정과목으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른 취득 절차도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기관 심사는 학위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학위과정에서 정해진 필수이수학점을 지정과목 또는 인정과목 등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 학생들의 인적사항, 교과과정, 성적 등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모아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자격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졸업예정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확인하고 국립국어원에 일괄 신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관을 통해 졸업예정자들의 자격 교부를 신청받은 국립국어원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을 통해 졸업예정자들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기관심사 및 개인 심사가 병행되던 현재의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실수 등으로 한 두 과목 등을 미수강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 이후에 자격증 심사를 요청하여 한 두 달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사이에 졸업예정자들의 구직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은 2급 취득이 가능한 학위과정만 해당한다.

교과목 지정 → 학위과정 교과목 변경운영 → 학위과정 졸업예정자 확인 → 기관이 국립국어원에 일괄신청 → 기관에 국립국어원이 일괄교부(2급)



<그림 10> 개정안에 따른 학위과정의 자동취득제 절차

### 3. 교과목 지정에 따른 정책 과제

학위과정의 교과목 지정과 자동취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정과목 실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정과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107개 기관, 방문조사, 설문조사, 4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현실에 근거한 지정과목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이 실제적으로 학위과정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 실시에 앞서 교과목 지정내용과 각 영역별 교과목 내용에 대한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학위과정에 대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기관심사가 약화되면서, 교과목의 교과내용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는 독립된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어국문학, 교육학과 내의 세부전공으로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러한 개설 형태의 특이점에 주목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희망하고 한국어교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에 필요한 교과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각 교과목의 기본적인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지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교과목에 따른 교과내용 지침서나 안내서를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기관 심사의 기능을 대체할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교과목 지정과 자격증 자동취득제를 실시함에 따라 한국어교원 운영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확인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생략되면서 교과목 운영의 질과 교과과정의 운영상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로 개설되어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교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개설학과의 교과과정 운영과 교과내용에 한해 확인하고 심의하는 방법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관별로 학과의 특성이나 차이점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의 교과과정에서 추구하던 학과별 특성이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정과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정과목의 형식으로 교과목 운영의 융통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대적인 변화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교과과정의 운영이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정과목의 범위나 내용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고시를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다. 이에 현재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심사하는 기관이 국립국어원임을 감안하여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섯째,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에서 운영되는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과목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위과정이지만,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원격교육의 수업시간이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강의참관 등 5영역의 실습 교과목 운영이 동영상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전임교원의 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은행제의 교과목 운영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제2절.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방안

### 1. 인증기준 안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유사자격제도를 비교한 결과, 이미 존재하는 비학위과정을 인증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비학위과정 인증제와 유사한 타 유사자격제도의 지정기관의 사례에서도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이 2010년에 배포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내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를 거쳐 <표33>과 같이 10개의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표33>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제안

영역	인증 기준	구체적 내용
기본요건	1. 교수 또는 강사진	수: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 총 5명 이상의 강사 확보 전공: 한국어교육 분야 (3영역과 5영역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소속: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2. 기본시설 및 설비	수: 최소 1개 이상의 전용 강의실 (전용 강의실: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시설구비) 면적: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
운영여건	3. 시설활용	이수학생 및 시설사용의 연중 지속성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4. 내부프로그램 평가 여부	내부프로그램 평가 실시
	5. 행정	행정직원 등 1인 이상 상주 또는 학생지원의 창구 마련
학습과목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총 교육 기간: 최소 4주 이상 1일 교육시간: 6시간 이하 교과목: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과목 기준
	7. 교육내용	교과목에 일치하는 교육내용
	8. 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교육참관 필수, 참관지도 및 참관일지 필수
	9. 교재	전문가가 참여한 출판 교재 및 자체 교재 사용
	10. 학습관리	총 교육시간의 85%이상 출석률을 수료조건으로 함 온라인, 온·오프라인의 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을 관리해야 함 교육 실습(5영역)은 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 1,2,3,4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국립국어원, 2010)와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인증기준은 먼저 3가지 영역, 즉,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으로 나뉜다. 기본요건 영역에는 기본시설 및 설비, 교수 또는 강사진이 포함되며, 운영여건 영역에는 시설활용, 내부프로그램 평가 여부, 행정이 포함된다. 학습과목 영역에는 교과과정 및 교과목, 교과 내용, 교재, 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학습관리가 포함된다.

교수 또는 강사진 기준은 수, 전공,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먼저 해당 기관 소속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여기서 ‘해당기관에 소속된 전임강사’라 함은 해당 기관에 계약되어 상주하면서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자를 의미한다. 전임강사를 포함한 총 강사진 수는 총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의 전공은 한국어교육 전공 또는 관련 분야여야 한다. 이 때 3영역과 5영역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기본시설 및 설비 기준은 한국어교원 교과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그 면적은 10인 이상의 수강생이 참여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여기서 ‘전용 강의실’이란 교육을 위한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의 기자재를 갖춘 교실을 의미한다.

운영여건 영역의 시설활용은 한 과정 당 총 학생 수의 정도, 1년 내 과정 운영 정도, 각 과정의 지속성에 대한 기준이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해 개설과 폐지가 자유롭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양성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일정한 학생 수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또한, 시설물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매 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실시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운영과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의 역할로서 반드시 요구된다. 행정에 대한 기준은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거나 수강생들을 지원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과목 영역은 교육기간, 교육 시간, 교과과정 및 교과목 등에 대한 기준이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양성과정 총 교육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1일 최대 6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많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하루 6시간 이상 운영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소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최대 6시간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교과과정 및 교과목은 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서 제시된 지정과목을 따라야 하며, 각 영역별로 교과목에 적합한 교과내용을 운영해야 한다. 추후 지정과목에 따른 교과내용에 관한 지침서 등이 배포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한국어교육 실습과 관련해서 강의참관은 필수과목이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하고, 강의참관에 따른 강의참관 일지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참관일지는 감상문 정도가 아닌, 수업, 강사, 강의순서, 학생들의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관 시 기관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의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하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관리에 대한 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조건으로 한다. 단,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으로 과정을 운영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 관리를 해야 한다. 한국어교육 실습(5영역)은 반드시 2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한다. 성적 관리는 1영역인 한국어학, 2영역인 언어학, 3영역인 한국어교육학, 4영역인 한국문화의 경우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며, 5영역인 한국어교육실습은 수강생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즉 각 교과목의 수료는 출석 기준에 부합하고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증명서를 자격 취득 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수 증명서의 과목명은 반드시 지정과목 또는 인정과목의 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이수자의 교육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 2. 인증 절차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따른 법령이 마련될 경우, 이에 따라 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인증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관련 기관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간이 교과과정, 교과목, 강사 등의 부분에서 인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표 후에 일정한 시간을 허락한 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법령 마련 → 인증기준 공표 → 인증실시 → 인증기관 이수자 배출 → 인증기관 이수증 발급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개인별 교부 요청 → 개인별 자격증 교부(3급)



<그림 11> 개정안에 따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절차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인증된 이후, 그 기관은 입학자를 받아 새로운 법령 개정안에 적용받는 이수자를 배출하게 된다. 인증받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과정 이수자가 배출되면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을 배부하게 되는데, 이로써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를 구비한 셈이다. 즉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국립국어원에서 교부하는 교원자격 3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결국,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에는 인증되지 않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인증받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 3. 인증제 실시에 따른 정책 과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한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교부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의 변별력을 일정수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에 대한 공표와 함께 구체적인 인증 절차와 인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현장에 홍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계획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한국어교육실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학생들에게 강의참관 기회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부설 기관의 경우 동 대학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일반 사설기관이나 대학 내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강의참관이나 실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습 기관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가운데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의 경우, 이들 기관에서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비인증 운영기관이 한국어교원 양성과는 별도로 해외에 파견되는 인력에게 한국어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도 재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선교나 이민 등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과의 친교를 위한 방법으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자격증 취득이 아닌, 친교 또는 봉사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

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어교육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지방의 경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운영하려 해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보다 훨씬 많아 그 학생 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수가 특정 지역에서 그 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학생 수 미달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영기관을 운영할 수 없을 때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제3절. 전문학사 자격요건 도입방안

### 1. 전문학사 자격요건 안

현재 한국어교원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세 단계의 구분은 앞서 비교한 국내 유사자격제도와 비교하여 외견상 커다란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준교사, 준사서와 같은 자격증의 ‘준’급을 ‘3’급으로 대신하고 있는 형태이다.

급수별 학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중등 정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사, 석사를 통해 현재 무검정시험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어교원의 역할을 ‘교육적 측면’으로 강조했을 때 이는 적절해 보인다. 학사 및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에 대한 요건을 더 두고 있는 평생교육사나, 전문학사와 박사에 대한 요건을 모두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사서에 비하면 학력에 따른 요건이 다양해 보이지 않으나, 급수에 따른 학력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는 요양보호사에 비하면 체계적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어교원 자격에서 박사 또는 전문학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학력완화에의 방침에 따라 이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전문학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한국어교원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34>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 자격요건 제안

요건	내용	법률 개정안
취득요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희망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교부	〈시행령 제13조 한국어교원 3급항목에 취득요건 추가〉 “전문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승급요건	한국어교원 3급 취득 후 2급으로 승급할 때는 운영기관 이수자에 준하여 시행	〈시행령 제13조 한국어교원 2급항목에 승급요건 추가〉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의 한국어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요건은 ‘전문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3급의 한국어교원 자격을 교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승급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이수자들의 기준에 준하여 정하며,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면 <표34>와 같다.

## 2. 전문학사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정책 과제

전문학사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의 요건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 생겨날 전문대학 내 학위과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대학에서 한국어교원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과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학 내 평생교육원이나 학과 등에서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으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sup>25)</sup>. 따라서 전문학사 자격 부여 요건을 현 한국어교원 급수 요건에 첨가한다면, 현재 실행할 수 있는 전문대학 내 학위과정은 없다. 그러나 추후 전문대학마다 관련 전공이나 학과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만일 전문대학 내 학위과정이 신설된다면 전문학사 졸업생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들의 인력 수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자들의 인력공급이 증가하고 전문가로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학사의 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어교원이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최소한 ‘한국어학’ 전공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그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수를 제한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존재유무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관련 학과나 전공도 없는 전문대학의 교원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개방하자는 논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25) 실태조사 결과 전문대학내 한국어학과로 개설한 학교가 한 군데 있었으나, 이 전공은 한국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외국인에게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 **제5장** 법령개정안

---

제1절.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2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제1절.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1. 주요내용

법령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도 복잡한 바, 현 시점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교과과정 및 교과목, 양성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법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9조이다. 즉 이 조항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자격 부여’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이나 양성기관에 대한 사항의 추가 또는 수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현재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교원과 관련된 조항인 국어기본법 제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급수 요건, 자격 취득시 충족해야 할 교과목, 교원 자격 심의방법, 승급을 위한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중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또는 새로이 도입할) 또는 수정할 사항을 제안한다. 먼저 추가(또는 새로이 도입할) 사항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관한 사항, 인증제 시행일,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수정할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결부된 별표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과목 예시를 지정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추가할(또는 새로이 도입할)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인증제 시행일, 자격 취소에 대한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다.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방법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날짜〉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 3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을 자동취득한 후에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관련 문제 등이 생기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이 포함한다. 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후 지정과목 및 인정과목에 대해 허위로 이수했음이 밝혀지거나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과정을 졸업하여 이미 자격증이 교부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원자격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교원 자격 승급 시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변동이 없으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관한 심의, 지정과목 동일교과목 인정과목 심의, 학위과정 졸업자가 허위신청으로 자격취득 시 자격 취소에 대한 심의에 대한 역할이 새로이 부여된다.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역할〉

- 영역별 과목의 적합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 한국어교원자격 승급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한 심의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관한 심의
- 지정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지만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의 심의(최종인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다)
- 학위과정 졸업자가 허위신청으로 자격취득시 자격취소에 대한 심의

그리고 현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결부된 별표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표의 과목 예시가 지정과목으로 변경된다. 지정과목은 앞서 밝힌 교과목 지정 안을 제안하며, 관련해서 변경된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에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한 기관의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등 교과과정 및 교과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운영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 〈지정과목 실시〉

-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학위과정 운영기관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별표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기준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전에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 기관은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비교

<표35>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개정안 비교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p> <p>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p> <p>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p> <p>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p> <p>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p>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p>
<p>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u>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u>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p>	<p>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p>

<p>(현) 국어기본법 시행령</p>	<p>(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령</p>
<p>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p> <p>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li> <li>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li> <li>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li> <li>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li> <li>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li> <li>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li> </ol>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p>	<p>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p> <p>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li> <li>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li> <li>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li> <li>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li> <li>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li> <li>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자격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p>

<p>(현) 국어기본법 시행령</p>	<p>(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령</p>
<p>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2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p> <p>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이전에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학위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입학하거나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이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2 (한국어교원자격의 취소)</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제 1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3조의3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등)</p> <p>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학위과정 운영기관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기준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전에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 기관은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동의를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현) 국어기본법 시행령</p>	<p>(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령</p>
<p>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14]</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비영리법인일 것</p> <p>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p> <p>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p> <p>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0.12.14]</p> <p>⑥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0.12.14]</p> <p>⑦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12.14]</p> <p>⑧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기준에 적합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방법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p> <p>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14]</p>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1. 비영리법인일 것</p> <p>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p> <p>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p> <p>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0.12.14]</p> <p>⑥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0.12.14]</p> <p>⑦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12.14]</p> <p>⑧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현)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p>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10.12.14]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 22조)을 각각 삭제한다.</p> <p>----이하 부칙 생략-----</p> <p>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별표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영역및검정방법 서식1 한국어교원자격증 서식2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p>	<p>부칙[2011.○.○ 대통령령 제○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개정안) 별표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영역및검정방법 서식1 한국어교원자격증 서식2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p>

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개정안)

영역	지정과목(개정안)	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	
1.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6학점	3학점		12시간
3. 한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공학론, 한국어교육정책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문화론, 한국문학론, 한국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1,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2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별표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서식1. 한국어교원자격증

<b>한 국 어 교 원 자 격 증</b>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	호
Certificate Number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Qualification Grade	
<p>「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p>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직인</div>	

## 서식2.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단체명·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설 립 목 적		설 립 연 도		
지원 요망 사항 :				
<p>「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 제2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1. 주요내용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새로 개정되는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밝힌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따른 인증 절차,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재지정,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이다. 인증제 실시와 따른 인증을 신청하려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이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최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증제 실시에 따라 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인증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증제 실시에 따라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이수자들만이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증명서 발급에 대한 항목도 첨가된다. 현행에서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는 공통된 이수증 형식을 요구하였다면, 개정된 안에서는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날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앞에서 정한 인증기준안은 별표2로 첨가되며, 다음과 같다.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영역	인증 기준	구체적 내용
기본 요건	1. 교수 또는 강사진	수: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 총 5명 이상의 강사 확보 전공: 한국어교육 분야 (3영역과 5영역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소속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2. 기본시설 및 설비	수: 최소 1개 이상의 전용 강의실 (전용 강의실 :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프로젝 트 등 시설구비) 면적: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
운영 여건	3. 시설활용	이수학생 및 시설사용의 연중 지속성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4. 내부프로그램 평가 여부	내부프로그램 평가 실시
	5. 행정	행정직원 등 1인 이상 상주 또는 학생지원의 창구 마련
학습 과목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총 교육 기간: 최소 4주 이상 1일 교육시간: 6시간 이하 교과목: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과목 기준
	7. 교육내용	교과목에 일치하는 교육내용
	8. 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교육참관 필수, 참관지도 및 참관일지 필수
	9. 교재	전문가가 참여한 출판 교재 및 자체 교재 사용
	10. 학습관리	총 교육시간의 85%이상 출석률을 수료조건으로 함 온라인, 온·오프라인의 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 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을 관리해야 함 교육 실습(5영역)은 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 실 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 1,2,3,4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

인증절차에 관한 조항에는 신청하는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심사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역할, 인정기관 지정 유효기관 등이 포함된다. 제출 서류는 총 6개로, 교수 및 강사진의 수, 전공, 소속 등 자격 및 경력 입증 서류,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 수강생 명부 및 이수내역,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편성표, 교재 목록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한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다.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 절차〉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 및 강사진의 수, 전공, 소속 등 자격 및 경력 입증서류
  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
  4. 수강생 명부 및 이수내역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편성표
  6. 교재 목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한국어교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 재인증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인증기관의 재지정〉

-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인증에 대한 취소 조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이후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인증의 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이후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수강생의 요청으로 인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4. 기타 한국어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증취소가 결정된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가 새로이 도입된 후, 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한 법령 문구는 다음과 같다.

**<이의 신청>**

- “신청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 재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증명서 인정과 시행날짜에 대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증명서 인정〉

- “이 경우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이수증명서는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각 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현행 별지서식 삭제)

#### 〈시행날짜〉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후단 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외 수정사항으로 별표 및 서식에 관한 부분이 있다. 시행규칙 별표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에서 지정과목으로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학위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하였다. 이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시 단순히 학위과정에서 필수이수학점만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분야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 〈필수이수학점 인정 학위과정의 단서 조사 삽입〉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필수이수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 1의 2영역인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이 언어학으로, 3영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이 한국어교육학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영역명, 별지 서식 6,7호의 영역명을 변경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1은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서식 내 영역명을 변경한 것이며, 별지 서식

6,7호의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영역별 과목명을 쓰는 란이 포함되어 있어, 위의 두 영역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및 대학원을 ‘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단기양성과정 등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으로 통칭할 것에 따라 별지 서식6호와 별지 서식7호의 제목이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에서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 확인신청서’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가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확인신청서’로 각각 변경되었다.

## 2.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

<표36> 국어기본법 시행규칙과 개정안 비교

(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p>제1조 (목적)</p> <p>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p> <p>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p> <p>「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p> <p>「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p> <p>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p> <p>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p>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p> <p>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p> <p>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p> <p>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p> <p>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6.30: 5호 후단]]</p> <p>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p>	<p>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조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p> <p>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이 경우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이수증명서는 영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각 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p> <p>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p> <p>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p> <p>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p> <p>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6.30: 5호 후단]]</p> <p>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p>

(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p>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p> <p>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p> <p>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p> <p>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p> <p>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 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 절차) ① 영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협 합격확인서</p> <p>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p> <p>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p> <p>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p> <p>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p> <p>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 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 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 절차) ① 영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p>1. 교수 및 강사진의 수, 전공, 소속 등 자격 및 경력 입증서류</p> <p>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p> <p>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p> <p>4. 수강생 명부 및 이수내역</p> <p>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편성표</p> <p>6. 교재 목록</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면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지정 여부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조(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 ) 영 제13조의3 제4항에 따른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제9조(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인증 이후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p> <p>3. 수강생의 요청으로 인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p> <p>4. 기타 한국어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증취소가 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p>

(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p>부 칙[2010.12.29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난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서식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서식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서식3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서식4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서식5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서식6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서식7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p>	<p>제11조(인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정책의 수립과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증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이의 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인증기관 재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부칙[2011.○.○ 대통령령 제○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개정안) 별표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개정안) 서식1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서식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삭제) 서식3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서식4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서식5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서식6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 확인신청서(개정안) 서식7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확인신청서(개정안)</p>

별표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개정안)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한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 별표1의 필수이수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별표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기준(개정안)

영역	인증 기준	구체적 내용
기본요건	1. 교수 또는 강사진	수: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강사, 총 5명 이상의 강사 확보 전공: 한국어교육 분야 (3영역과 5영역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소속: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2. 기본시설 및 설비	수: 최소 1개 이상의 전용 강의실 (전용 강의실: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시설구비) 면적: 10인 이상 참여 가능한 교육장소의 확보
운영여건	3. 시설활용	이수학생 및 시설사용의 연중 지속성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4. 내부프로그램 평가 여부	내부프로그램 평가 실시
	5. 행정	행정직원 등 1인 이상 상주 또는 학생지원의 창구 마련
학습과목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총 교육 기간: 최소 4주 이상 1일 교육시간: 6시간 이하 교과목: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과목 기준
	7. 교육내용	교과목에 일치하는 교육내용
	8. 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교육참관 필수, 참관일지 필수, 지도 필수
	9. 교재	전문가가 참여한 출판 교재 및 자체 교재 사용
	10. 학습관리	총 교육시간의 85%이상 출석률을 수료조건으로 함 온라인, 온·오프라인의 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 사 및 출결을 관리해야 함 교육 실습(5영역)은 2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하며, 실 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 1,2,3,4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

## 별지 제1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반명함판, 3×4cm)		<b>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b>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영문) *여권에 적힌 이름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자격증 발송 주소임		⑤전화(휴대전화)	
	⑦신청 등급	( )급-( )번		⑥전자우편	
⑨학력	부터	까지	최종 학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시간	
⑪한국어 교육 근 무경력	부터	까지	근무기관	직위(급)	발령자
	· · ·	· · ·			
	· · ·	· · ·			
<p>「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문화체육관광부장관</b> 귀하</p>					
※ 구비 서류: 뒤쪽 참조 ※ 작성 시 유의 사항: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②번란에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⑧번란부터 ⑪번란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⑪번의 직위(급)란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자 우 편		전화(휴대전화)	
	주 소			
자 격	등 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p>『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p>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신청 기관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① 신청 과목명			② 과목의 해당 영역	( ) 영역
③ 과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부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박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학부 연계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다른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교양과목 <input type="checkbox"/> 전공 교직과목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	
④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토론식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접 기재: )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시간		
	기타			
⑤ 주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부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⑦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 기관의 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10px; 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span> </d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개정안)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 확인신청서							
신청과정		<input type="checkbox"/> 대학(학부과정)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신청기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1. 한국어학				3. <u>한국어 교육학</u>			
2. <u>언어학</u>				4. 한국 문화			
3. <u>한국어 교육학</u>				5. 한국어 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학점	(        학점)			
붙임 서류: 교수요목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 </d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정안)

한국어교원 <u>비학위과정</u> 운영기관 확인신청서							
신청 기관명				과정명			
과정 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단기 집중과정 <input type="checkbox"/> 방학과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일수/주당				수업 시간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어학				3. <u>한국어 교육학</u>			
2. <u>언어학</u>				4. 한국 문화			
3. <u>한국어 교육학</u>				5. 한국어 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이수시간	(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정 소개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 기관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 </d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제6장

## 결론 및 제언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시행된 지 약 6년이 지난 비교적 새로운 자격증 발급 제도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한류 열풍,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및 해외 이미지 제고 등에 힘입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격증 취득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주로 민간을 중심으로 소수의 비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져 오던 교사 양성 교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수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도 개설되어 학사 및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오랜 시행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중등 교사자격증, 사회복지사, 사서 등과 같은 국내 자격증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등 관련 전공의 대학(원) 내 설치 형태 및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교과과정 및 교과목, 국내의 타 자격제도의 경우에 비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많은 수, 승급 시 갖추어야 할 경력 산정 기준, 졸업 후 취업 기관의 다양성, 자격취득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복잡한 사항들을 감안해야 하는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 지정 방법,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 방안, 그리고 자격제도 내 전문학사 요건 도입 방안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문헌조사, 유사 자격제도 비교조사,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대상의 교과목 기초자료조사와 일부 방문조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공청회를 통한 관련대상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교원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 영역명 수정, 영역별 교과목 지정 및 인정 과목 제안,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안 제안, 그리고 전문학사 한국어교원 취득부여 요건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의 5개 영역명 중 2개의 영역명이 변경되었는데,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이 언어학으로,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이 한국어교육학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현재 법령의 과목 예시로 있는 과목 중에서 국어학개론과 한국어교육과정론 등은 한국어학개론, 언어교수이론 등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은 각각 한 과목씩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읽기교육론으로 나누어져 지정과목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사, 한국어한자교육론 등은 삭제되었으며 한국어교육공학론 등은 새로이 첨가되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4영역의 과목으로, 이전의 과목명은 모두 삭제되고 한국문화론, 한국문학론, 한국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한국문화 4개의 과목으로 새로이 지정하였다. 5영역의 경우도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1,2로 새로 재정하였다.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지정과목 실시에 따라 정책적 융통성과 각 기관의 자율성 또한 보장하기 위해 지정과목에 따른 동일교과목 인정과목을 제안하였으며, 지정과목명에 “외국어로서의~, ~연구, ~탐구, ~연습, ~이해”가 포함된 경우도 인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쟁점이었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각 기관의 한국어교육 담당자, 교육 전문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를 제안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기본요건, 운영여건, 학습과목 3영역으로 나뉘며, 기본요건 영역에는 기본시설 및 설비, 교수 또는 강사진, 운영여건 영역에는 시설활용, 내부 프로그램 평가 여부, 행정, 학습과목 영역에는 교과과정 및 교과목, 교과내용, 교재, 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학습관리가 포함되어 총 10가지 항목이다. 인증기준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 국내 유사자격제도와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책제도 안이 현실에 적용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설치 기관 또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한국어학당, 국제교류원 등 다양한 까닭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10개의 인증기준에 따른 상세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셋째, 전문학사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취득요건은 전문대학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희망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승급요건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이수자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3급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의 한국어교원 경력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 전문대학 내 관련 전공이 없으며, 전문학사 자격요건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부문의 학력완화정책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문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각 학력별로 요건이 다양하게 있는 국내 사례가 있음에 이를 감안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안도 마련해 보았다. 이는 향후에 학력완화 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위의 안들을 마련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하였다. 약 250명 가량의 관련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담당자 및 교수, 연구자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등에 공청회 실시를 공지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및 그들의 입장을 들었다. 공청회를 통해 새로이 지정된 과목들의 적절성,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내용,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실습과목의 어려움, 관련 부처에 바라는 정책 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으며,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최초 인증 후 재평가 실시 시 인증기준 그대로 적용, 해외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의 불인정 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령 개정안은 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의 자문을 받아 지정과목으로의 변경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 개정안에, 이에 따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전문을 본문에 실었다. 그 결과, 시행령에서는 별표1의 과목 예시가 지정과목으로 변경되어 새로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학위과정 운영기관과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새로 개정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위의 기준에 적합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다는 법령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도 추가되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도 이전의 역할에 비하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 심의, 지정과목에 따른 동일교과목 인정과목 심의 등이 첨가되었다. 단, 지정과목에 따른 동일교과목 인정과목은 법령이 아닌, 고시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타 국내 자격제도에서 인정과목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령 보다는 고시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운영 실태에 준한 판단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제 실시에 따른 인증기준 외에도 인증 절차, 인증기관 재지정, 인증의 취소 등이 첨가되었다. 인증절차에 관한 조항에는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심사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 인정기관 지정 유효기관 등이 포함된다. 제출 서류는 총 6개로, 교수 및 강사진의 수, 전공, 소속 등 자격 및 경력 입증서류,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 수강생 명부 및 이수내역,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편성표, 교재 목록이다.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은 3년이며, 이는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인증에 대한 취소 조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이후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인증이 취소된 기관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이 인증기관 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수정사항으로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이수증명서는 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각 서식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시행규칙 별표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에서 지정과목으로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학위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정과목에 대한 관련부처와 협의, 현재의 기관 심사의 기능을 대체할 평가시스템의 도입, 지정과목 실시로 각 과정의 강점이나 특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 마련,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원활한 교육실습을 가능케 하는 정책 지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제 실시 시 지방간 격차 완화 대책이 필요하며,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학위과정에 대한 검토와 비인증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특성화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개정된 제도가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지침서 및 안내서 마련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증절차나 인증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

---

[부록1] 국내 자격제도 유사사례

[부록2]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현황

[부록3] 방문조사 질문지

[부록4] 설문조사 질문지



# [부록 1] 국내 자격제도 유사사례

## 1. 지정과목 실시 사례

### 1) 유치원 및 초중등 정·준교사

<표 부록-1> 유치원 및 초중등 정준교사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4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준교사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10학점(5과목) 이상 -교직이론

\*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는 제외함

\* 자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3 재구성

<표 부록-2>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교사 기본이수과목명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학, 이동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초등교육과(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9호 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자료 재구성

<표 부록-3>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공통사회	사회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공 통사회교육전공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학과)	(1)공통사회교육론(또는사회교육론) (2)정치와사회(또는 정치학), 경제와사회(또는 경제학), 문화와사회(또는 사회학), 법과사회 (또는 법학), 인간과사회(문화인류학) (3)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 학개론, 문화사(한국문화사, 동양문화사, 서양 문화사) (4)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 한국 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1)분야에서 1과목, (2)-(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 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수학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 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 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피론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 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 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 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 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9호 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3 자료 재구성

&lt;표 부록-4&gt;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교직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li> <li>-교육학개론</li> <li>-교육철학 및 교육사</li> <li>-교육과정</li> <li>-교육평가</li> <li>-교육방법 및 교육공학</li> <li>-교육심리</li> <li>-교육사회</li> <li>-교육행정 및 교육경영</li> <li>-생활지도</li> <li>⇒생활지도 및 상담</li> <li>-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li> <li>-교육학개론</li> <li>-교육철학 및 교육사</li> <li>-교육과정</li> <li>-교육평가</li> <li>-교육방법 및 교육공학</li> <li>-교육심리</li> <li>-교육사회</li> <li>-교육행정 및 교육경영</li> <li>-생활지도</li> <li>⇒생활지도 및 상담</li> <li>-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li> </ul>
교직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특수교육학 개론</li> <li>(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li> <li>-교직실무(2학점 이상)</li> </ul>	
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li> <li>-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li> </ul>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9호 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자료 재구성

## 2) 평생교육사

&lt;표 부록-5&gt; 평생교육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자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3) 보육교사

<표 부록-6>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_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이상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이상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이상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교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표 부록-7>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3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 비교

-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5

## 4) 보건교육사

&lt;표 부록-8&gt;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이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교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관련 법인·단체가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에 아래의 명칭이 붙는 경우 심사없이 유사과목으로 인정함

~ 학, ~(개, 원)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I, II, ~(및)실험, 습, 무, ~(및)연습

\*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4

## 5) 사서

&lt;표 부록-9&gt;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 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1급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선택
2급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II) 저작권론(II)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 에서 선택

비 고 : 필수과목 중(Ⅰ)의 내용은 기초과정, (Ⅱ)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09-49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고시 내용 참조

## 6) 사회복지사

<표 부록-10>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관련)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이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7) 요양보호사(보건복지부)

&lt;표 부록-11&gt;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2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2	3	
	기본요양 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6
				5	8
				5	8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기본요양 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6	8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6	
서비스 이용지원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3	3
			응급처치 기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 2. 급수별 자격기준 사례

### 1) 유치원 및 초중등 정·준교사

<표 부록-12>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자료 : 유아교육법 별표2

<표 부록-13>초·중등교사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등급	자격기준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준교사	1.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 자료: 초·중등교육법 별표2

&lt;표 부록-14&gt; 중등 교사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준교사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수산·해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3. 중등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학사학위 과정에 한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자료: 초·중등교육법 별표2

## 2) 평생교육사

<표 부록-15>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li> <li>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li> <li>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li> <li>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li> <li>다. 학점은행기관</li> </ol> </li> <li>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li> </ol>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li> <li>나. 지정양성기관</li> <li>다. 학점은행기관</li> </ol> </li> <li>3.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li> <li>4.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li> </ol>

\* 자료: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 3) 보육교사

&lt;표 부록-16&gt;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 4) 보건교육사

&lt;표 부록-17&gt; 보건교육사 등급 응시자격기준

시험종목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 자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4

### 5) 사서

<표 부록-18>사서직원의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정사서 1급	1.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정사서 2급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2.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사서	1.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자 2.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 자료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

## 6) 사회복지사

&lt;표 부록-19&gt;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3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 [부록 2]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현황

### 1. 학위과정 운영기관 운영실태

#### 1) 정규과정

기관	학교	학부	일반 대학원	교육 대학원	특수·전문 대학원	지역	설립년도
1	경동대학교	○				강원(고성)	2007.02.27.
2	경북외국어대학교	○				대구	2005.03.01.
3	광신대학교	○				광주	2008.03.01.
4	대구대학교	○				경북(경산)	2008.03.01.
5	대구한의대학교	○				경북(경산)	2006.06.01.
6	동신대학교	○				충남(아산)	2007.07.01.
7	세명대학교	○				충북(제천)	2006.03.01.
8	한중대학교	○				강원(동해)	2010.03.02.
9	호남대학교	○				광주	2008.03.01.
10	경희대학교		○	○		서울	일반 2003.04.01. 교육 1998.03.02.
		○	○			경기(용인)	학부 1999.03.01. 일반 2007.03.01.
11	계명대학교	○	○			대구	학부 2003.03.03. 일반 2007.03.02.
12	대불대학교	○	○			전남(영암)	학부 2004.03.01. 일반 2006.03.01.
13	배재대학교	○	○	○		대전	학부 2004.03.02. 일반 2008.03.03. 교육 2009.03.03.
14	부산외국어대학교	○	○	○		부산	학부 2005.03.02. 일반 2005.11.01. 교육 2002.11.12.
15	선문대학교	○		○		충남(아산)	학부 2007.07.01. 교육 2001.07.26.
16	우석대학교	○			경영행정 문화대학원 ○	전북(원주)	학부 2006.03.02 대학원 2007.03.02.
17	중부대학교	○			인문산업 대학원 ○	충남(금산)	학부 2006.03.01. 대학원 2009.11.01.
18	한국의외국어대학교	○	○	○		서울	학부 1974.02.01. 일반 2005.08.26. 교육 1999.11.19.
19	가톨릭대학교		○	○		경기 (부천)	일반 2007.10.29. 교육 2004.11.

기관	학교	학부	일반 대학원	교육 대학원	특수·전문 대학원	지역	설립년도
20	건국대학교		○			서울	2008.01.01.
21	건양대학교		○			충남(논산)	2007.11.01.
22	고려대학교		○	○		서울	일반 2006.03.01. 교육 1999.09.01.
23	공주대학교		○			충남(공주)	2008.01.01.
24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	광주	2009.01.01.
25	군산대학교			○		전북(군산)	2004.03.01.
26	대구기톨릭대학교		○			대구	2008.01.01.
27	대진대학교		○			경기(포천)	2007.03.02.
28	동국대학교		○			서울	2006.03.01.
29	동아대학교			○		부산	2009.03.02.
30	부경대학교			○		부산	2009.03.01.
31	상명대학교		○	○		서울	2002
32	서울대학교		○ (사범대학원)			서울	2002.03.02.
33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	2006.09.
34	세종대학교		○			서울	2009.03.
35	숙명여자대학교		○			서울	2008.08.01.
36	순천대학교		○			전남(순천)	2010.03.02.
37	숭실대학교			○		서울	2009.10.30.
38	연세대학교		○	○		서울	일반 2007.03.01. 교육 1997.09.01.
39	영남대학교		○			경북(경산)	2006.01.02.
40	울산대학교		○			울산	2008
41	이화여자대학교			○	외국어교육 특수대학원 ○ 국제대학원 ○	서울	교육 1997.03.01. 외특 2009.11.23. 국제 2006.03.02.
42	인하대학교		○	○		인천	일반 2008.03.03. 교육 2006.03.02.
43	중앙대학교		○			서울	2007.03.01.
44	청주대학교		○			충북(청주)	2005.03.02.
45	충북대학교			○		충북(청주)	2007.11.01.
46	한남대학교		○	○		대전	일반 2004.01.01. 교육 2007.12.12.
47	한성대학교		○			서울	2006.11.
48	한양대학교			○		서울	1998.10

2) 기타

번호	학교	학부		일반 대학원	교육 대학원	특수·전문 대학원	지역	설립년도
		학 점 은 행 제	사 이 버 대 학					
				협동과정				
49	동덕여자대학교			○			서울	2006.09.01.
50	부산대학교			○			부산	2006.12.01..
51	전남대학교			○ (시범대학)			광주	2011.03.02.
52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					경기(용인)	2007.09.03.
53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울	2007.08.01.
54	선문대학교 사회교육원	○					충남(천안)	2010.03.02.
55	송실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울	2011.03.02.
56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					충남(아산)	2010.03.08.
57	영남대학교 학점은행제	○					대구	2010.03.02.
58	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					경북(철곡)	2010.02.09
59	평택대학교 국제교육원	○					경기(평택)	2009.03.09.
60	경희사이버대학교		○				서울	2005.11.04.
61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서울	2008.12.01.
62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	2007.03.01.
63	원광디지털대학교		○				전북(익산)	2009.12.01.
64	화신사이버대학교(구.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학교)		○				부산	2009.01.01.

\* 기간: 2010년 1월부터 현재(2011.7)까지

기준: 국립국어원에 교과과정 심사신청을 한 기관 (부적합 및 보류판정을 받은 기관 제외)

## 2.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현황

### 1) 대학부설기관

기관	분류	학교명	기관명	과정명	운영형태	지역
1	국제교류원 관련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경기
2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반	오프라인	경남
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제교류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북
4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대전
5		강남대학교	국제어학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기
6		서울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센터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7		공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8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9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대구
10	한국어학당 관련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야간과정)	오프라인	대전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양성과정 (단기방학과정)	오프라인	대전
11		조선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광주
12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서울
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사연수소	오프라인	서울
14		이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경기
15		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한국어교육원	사이버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16		우석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17		전북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18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부산
19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남
20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21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서울
22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2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24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교사 연수 과정	오프라인	서울
25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26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사양성과정 (국외)	오프라인	부산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사양성과정 (국내)	오프라인	부산	
27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광주	

기관	분류	학교명	기관명	과정명	운영형태	지역	
2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29		성결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경기	
30		건국대학교(충주)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북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3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32		위덕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북	
33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34		대구가톨릭대학교	어학교육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북	
35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서울	
			국제언어교육원	재외한글 학교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36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 전문가 과정 (단기집중과정)	오프라인	서울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 전문가 과정 (야간과정)	오프라인	서울	
37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부산	
38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기	
39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부산	
40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41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42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43		한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강원	
44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언어교육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45		충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대전	
46		문화원 관련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한국어교육 전문가 과정	오프라인	경북
47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남
48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4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북
50			강원대	한국어문화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강원
51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52			전주대	한국어문화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53			전남대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광주
54			동아대	국어문화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부산
55			평생교육원 관련	청강문화산업대학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56		한밭대학교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대전
57		송실대학교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58		전주기전대학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59	원광보건대학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60	진주교육대학교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남	
61	고신대학교	평생 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야간반)	오프라인	부산	

기관	분류	학교명	기관명	과정명	운영형태	지역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부산
62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경기
63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남
64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인천
65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강사	오프라인	대전
66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강사	오프라인	충북
67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3급 대비반	오프라인	경기
68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지도사과정	오프라인	충북
69		영동대학교	사회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북
70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71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	한국어지도사	오프라인	충남
72		삼육대학교	사회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73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74		한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경기
75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강원
76		침례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대전
77		한서대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남
78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79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지도사	오프라인	강원
80		한일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전북
81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강원
82		울산대	평생교육원	한국어지도사	오프라인	울산
83		평택대학교	평생·국제교육원	한국어교원 양성	오프라인	경기
84		서울시립대학	서울시민대학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85	산학협력부속 기관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충북
86		호서대학교	산업문화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87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한국어교사 자격인증과정	오프라인	경북
88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별과정	한국어교육자 과정	오프라인	서울
89	기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오프라인	서울
90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연구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광주
9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온라인	서울

### 2) 사설기관

번호	학교명	기관명	과정명	운영형태	지역
92	대한고시연구원	대한고시연구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온라인	서울
93	(주)메네지먼트코리아	IOA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여성부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IOA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중국취업 한국어강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IOA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94	제이케이글로벌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95	한국평생교육인재개발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	전남
96	(사)여성정책연구소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어지도사	오프라인	부산
97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오프라인	부산
98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인도네시아 개설)	오프라인	서울
99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어강사양성	오프라인	부산
100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경남
101	사단법인 국어생활연구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서울
102	국제복지평생교육	국제복지평생교육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103	한중국제교류센터 (법인회사)	한중국제교류센터	중국취업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한중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104	청출어람	청출어람 (산업인력공단과 공동운영)	해외취업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오프라인	서울
105	마이한글닷컴	마이한글닷컴 (경희대 국제교육원 공동운영)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온·오프라인	서울

### 3) 기타

번호	분류	학교명	기관명	과정명	운영형태	지역
106	지자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울산
107		인천시 평생학습관	인천시 평생학습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오프라인	인천

\* 기간: 2010년 1월부터 현재(2011.7.)까지

기준: 국립국어원에 교과과정 심사신청을 한 기관 (부적합 및 보류판정을 받은 기관 제외)

## [부록 3] 방문조사 질문지

### 1. 운영실태 조사사항 및 요청자료

구분	학위과정 운영기관 조사사항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조사사항
기관 개요	설립년도 및 총 운영기간	설립년도 및 총 운영기간
	운영 목적	운영 목적
교육 기간	일년 내 학기 수	일년 내 교육횟수
	총 학기	총 기간
	교육시간(주간/야간)	교육시간(주간/야간)
교육과정	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준	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준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
	교재명 및 교재선택 기준	교재명 및 교재선택 기준
학생	학생 수 현황	학생 수 현황
	입학생 수 추이	입학생 학력 및 수 추이
	졸업 현황 및 졸업률	졸업 현황 및 졸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졸업자 취업 형태/분야/취업률	-
강사	전임강사 수	전임강사 수
	교수진 구성	교수진 구성
	전공 및 학위수준	전공 및 학위수준
	경력	경력
시설	-	강의실 수 및 강의실 크기
	-	강의기자재
	-	행정직원 및 행정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관리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학사 및 출결 관리)
		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
자격제도에 대한 의견	현 교과과정 심사에 대한 의견	현 교과과정 심사에 대한 의견
	교과목 지정에 대한 의견	교과목 지정에 대한 의견
	전문학사 도입에 대한 의견	전문학사 도입에 대한 의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대한 의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대한 의견

## 2. 현장조사 요청자료

번호	학위과정 운영기관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1	-현 교과과정 및 교과목	-현 교과과정 및 교과목
2	-사용 교재 리스트	-사용 교재 리스트
3	-졸업자 취업현황 및 자격증 취득률 자료	-
4	-전임교원 및 강사진의 수, 자격, 경력증명 서류	-전임교원 및 강사진의 수, 자격, 경력증명 서류
5	-학생관리 관련 자료	-내부평가 및 학생관리 관련 자료
6	-	-시설 및 설비 목록
7	-강의안(참고자료)	-강의안(참고자료)

## 3. 질문지 사항 \_ 학위과정 운영기관

시설명	면접일시	2011. . 시 분	면접대상자	
			면접대상자 이메일	
			면접대상자 연락처	
면접조사자: _____				
구분	질문항목	내용		
기관 개요	설립년도 및 총 운영기간			
	운영목적			
교육 기간	일년 내 학기 수			
	총 학기			
	교육시간(주간/야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준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			
	교재명 및 교재선택 기준			

구분	질문항목	내용
학생	학생 수 현황	
	입학생 수 추이	
	졸업 현황 및 졸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졸업자 취업 형태/분야/취업률	
강사	전임강사 수	
	교수진 구성	
	전공 및 학위수준	
	경력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관리	
자격제도 에 대한 의견	현 교과과정 심사에 대한 의견	
	교과목 지정에 대한 의견	
	전문학사 도입에 대한 의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대한 의견	

## 4. 질문지 사항 \_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시설명		면접일시	2011. . 시 분	면접대상자	
				면접대상자 이메일	
				면접대상자 연락처	
면접조사자: _____					
구분	질문항목	내용			
기관 개요	설립년도 및 총 운영기간				
	운영목적				
교육 기간	일년 내 교육횟수				
	총 기간				
	교육시간(주간/야간)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과과정 및 교과목 기준				
	교과목 강의안 및 내용				
	강의참관 및 교육실습				
	교재명 및 교재선택 기준				

구분	질문항목	내용
학생	학생 수 현황	
	입학생 학력 및 수 추이	
	졸업 현황 및 졸업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률	
강사	전임강사 수	
	교수진 구성	
	전공 및 학위수준	
	경력	
시설	강의실 수 및 강의실 크기	
	강의 기자재	
	행정직원 및 행정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관리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학사 및 출결 관리)	
	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	
자격제도 에 대한 의견	현 교과과정 심사에 대한 의견	
	교과목 지정에 대한 의견	
	전문학사 도입에 대한 의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에 대한 의견	

## [부록 4] 설문조사 질문지

###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 인 사 말 씀

국립국어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한국어교원자격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학위과정 내 필수이수학점 취득 교과목을 지정하여 자격취득절차의 편의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추진)제 도입 및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부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참여 해주신다면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성명	조사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대학/학과)	직책	연구책임: 윤 소 영 책임연구원
연락처	이메일	문의: 신호원, 김혜원

E-MAIL: kcti2011@hanmail.net

TEL: 02-2669-9873, FAX 02-2669-6991

## I. 교과목지정

### 대학(원)과정 졸업예정자의 한국어교원 자동취득을 위한 필수이수학점 취득과 관련한 의견수렴

- 현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매회 자격취득 심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여부를 심사함.
  - 그러나 각 대학(원)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과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영역마다 개설된 과목명이 다르고, 어떤 영역의 경우 개설된 과목이 아예 없는 과정도 있어 필수이수학점의 승인여부에 불편함이 초래됨.
  - 이에 필수이수학점 취득 교과목을 지정하고 대학(원) 과정 졸업예정자의 한국어교원 자동취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경우 법정교과목명과 인정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교과목의 불일치로 인한 승인불가의 사례가 적음.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1** 한국어교원자격의 경우에도 타 자격제도와 같이 과목을 지정하여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반대(        )

**2** 다음은 현재 법령에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예시입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과목 예시를 지정과목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영역	과목 예시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현재 법령에 제시하고 있는 과목 예시만을 지정과목으로 선정한다. (        )

현재 법령에 제시하고 있는 과목 예시 외에 그에 준하는 인정과목을 지정한다. (        )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        )

새로운 방식 제안:

**2-1** 현재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 예시를 지정과목으로 선정했을 때 각 영역별로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과목이 있다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영역	추가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3-1** 다음은 현재 법령에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1영역 한국어학 과목 예시와 그에 준하는 인정과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인정과목의 허용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	매우 허용 가능	허용 가능	보통	허용 불가능	매우 허용 불가능
<1영역> 한국어학	국어학 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학 연구					
		한국어학일반론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음성·음운론					
		한국어 음운론 연구					
		한국어음운이론연구					
		현대국어음운론연구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문법의 이해					
		한국어문법론연구					
	한국어 어휘론	한국어어휘·형태론					
		현대국어어휘론연구					
		한국어어휘론특수연구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의미론 연구					
		한국어어의미·화용론					
		한국어어의미의 이해					
	한국어 화용론	한국어 화용론 연구					
	한국어 사	한국어사연구					
		한국어발달사					
		한국어변천사					
		국어문법사 연구					
	한국어 어문규범	한국어교시를 위한 어문규범					
		한국어맞춤법과 표준어규정					
		한국어규범론 연구					
		한국어 규범론					

기타의견:

**3-2** 다음은 현재 법령에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과목 예시와 그에 준하는 인정과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인정과목의 허용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	매우 허용 가능	허용 가능	보통	허용 불가능	매우 허용 불가능
<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응용한국어학연구					
		응용언어학일반론					
	언어학개론	현대언어학연구					
		언어학일반론					
		언어학의 이해					
	대조언어학	대조언어학이론과실제					
		비교언어학연구					
		대조언어학이론연구					
	외국어습득론	언어습득연구					
		한국어습득연구					
		제2언어학습이론					

기타의견:

## 3-3

다음은 현재 법령에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과목 예시와 그에 준하는 인정과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인정과목의 허용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	매우	허용	보통	허용	매우
			허용 가능	가능		불가능	허용 불가능
<3영역> 외 국 어 로 서 의 한 국 어 교 육 론	한국어교육개론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학연구					
		한국어교육원론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설계					
	한국어평가론	한국어능력평가론					
		한국어교육평가					
	언어교수이론	한국어교수법					
		외국어교수법					
		외국어로로서의한국어교수방법론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어교수학습론					
	한국어표현교육 법 (말하기, 쓰기)	한국어쓰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교육론					
		한국어말하기쓰기교육론					
	한국어이해교 육법 (듣기, 읽기)	한국어읽기교육론					
		한국어듣기교육론					
		한국어듣기읽기교육론					
	한국어 발음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한국어 문법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연구					
	한국어교재론	한국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교재구성 및 개발연구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전통문화교육론					
		한국현대문화교육론					
한국문화교육의 실제							

기타의견:

**3-4** 다음은 현재 법령에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4영역 한국문화 과목 예시와 그에 준하는 인정과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인정과목의 허용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	매우 허용 가능	허용 가능	보통	허용 불가능	매우 허용 불가능
<b>&lt;4영역&gt;</b>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 민속의 이해					
		한국인의 삶과 민속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화기초연구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와 사상의 이해					
		한국현대문화론연구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전통사상연구					
	전통문화 현장실습	한국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체험실습					
	현대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기타의견:

**3-5** 다음은 현재 법령에 있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예시와 그에 준하는 인정과목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인정과목의 허용 정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과목 예시	인정과목	매우 허용 가능	허용 가능	보통	허용 불가능	매우 허용 불가능
<b>&lt;5영역&gt;</b> 한국어 교육실습	강의 참관	한국어 강의 참관					
	강의 실습	한국어 강의 실습					
		한국어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타의견:

## II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추천)제 도입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인증(추천)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 국내에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곳으로 대학(원) 외에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국내외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 등이 「고등교육법」 등에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규정 및 규제가 없으므로 부실 운영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추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4** 한국어교원양성을 위한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추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반대(        )

**5**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추천)제를 실시한다면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형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추천)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운영하도록 한다. (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우수한 3~5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        )

새로운 방안제안:

**6**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추천)제를 실시한다면 향후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인증한 기관에 대해 자격요건이 계속 충족되면 해당 기관의 인증(추천)을 유지한다. (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를 통한 재인증(2년 또는 3년에 1번)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        )

새로운 방안제안:

**7**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인증(추천)제 도입 시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세부사항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 없음	매우 필요 없음
I. 기본요건 영역	1. 교수 또는 강사진 (수, 전공, 전임강사 수 등)					
	2. 기본 시설 및 설비 (강의실 수, 면적 등)					
II. 운영여건 영역	3. 시설 활용 (이수학생 수, 시설사용 일수 등)					
	4. 내부 프로그램 평가 여부					
	5. 행정 및 재정					
III. 학습과목 영역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 (교육 기간 및 시간 포함)					
	7. 교육내용					
	8. 실습과목 및 평가 여부					
	9. 교재					
	10. 학습관리(출석, 성적 등)					

기타의견 및 보충항목 작성:

### Ⅲ. 전문학사의 자격취득방안

####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대한 의견 수렴

-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자, 또는 한국어교원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을 이수한 자의 자격취득 조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학력차별 완화 정책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내 발생할 수 있는 학력규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학력별로 보다 공정하고 체계화 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 \* 타 자격제도의 경우 전문학사가 따로 명시된 경우가 있으며 학예사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의 자격취득 조건의 경우 경력 부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더 완화되어 있음.
- 전문학사에 대해 한국어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

**8** 전문학사의 한국어교원자격 자동취득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반대(        )

**9** 전문학사에 대한 한국어교원자격 부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        )

부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        )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        )

부전공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되 검정시험을 치르게 한다. (        )

새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        )

새로운 방안:

**\*참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번호	영역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감사합니다 \***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2)”

## 보고서

---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42

발행일 2011년 7월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